

함께하는 복지실현을 위한 방안

－ 자원봉사 및 민간부문 복지자원 활성화 대책－

2006. 10. 20

국회의원 안 명 옥

최근 복지천국의 모델로서 인식되어 왔던 스웨덴식 복지국가 운영방식이 자국민들에 의해 방향전환이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복지정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최근 정부는 ‘비전 2030’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전 국민이 집걱정, 병원비 걱정, 먹거리 걱정 없는 꿈같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1,100조를 투입한다는 야심 찬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고, 많은 비판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복지혜택의 범위를 무조건 확대해나가는 전통적인 방식은 국가재정 형편상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정된 재정 범위 내에서 복지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선 복지 수혜대상자의 올바른 선정과 혜택의 효율적인 제공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피드백 시스템을 비롯해 효율적인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확립이 필요합니다.

복지정책의 구조적 모순들을 해결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복지정책 운영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외국 복지정책들을 무조건 모방하여 산발적으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정에 맞는 소위 대한민국형 복지정책을 새롭게 정립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상부상조하며 살아가는 우리 민족이 지켜온 공동체정신과 미풍양속을 되살려 더불어 살아가는 대한민국형 복지체계를 확립해나가야 합니다. 시민사회 성숙과 더불어 활성화되고 있는 자원봉사 인력을 복지전달체계에 제대로 흡수하여 최대한 활용하고, 지역사회에 산재한 자발적 복지단체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기적인 연대 속에 복지기능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나가야 합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련법 제정 및 개정도 필요합니다.

본 자료집은 근대화 및 산업화 시절의 전통적 복지국가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적 흐름과 현실에 부합하게 민간 복지자원의 활용 극대화를 통한 선진 복지국가를 추구하려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담고자 노력했습니다.

본 자료집을 통해 자원봉사 및 민간부문 복지자원의 활용이 극대화 되고, 모든 국민이 서로 돕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행복감과 보람을 느끼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복지국가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2006년 10월

국회의원 **안 명 옥**

I. 서	론	1
II. 민간복지 운영 현황 및 발전방향		5
1. 자원봉사의 운영 현황 및 발전방향		7
2. 민간복지부문 재원 운영 현황 및 발전방향		34
3.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현황 및 발전방향		55
III. 정부주도 복지정책 수행의 한계와 민간복지 현황		69
1. 정부주도 복지정책 수행의 한계와 문제점		71
2. 민간부문 복지 현황		73
3. 민간복지 자원 활용 : 민간시설, 사회단체 동력 활용		86
4.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연계 및 역할 분담 방안		90
IV. 결	론	99
V. 부	록	105

함께하는 복지실현을 위한 방안

I

서론

- 오늘날 세계의 주요 화두는 ‘지속 가능한 발전’임. 20세기 시장과 정부의 한계와 실패로 세계가 지속 불가능한 총체적 위기에 처하게 되었으며, 새로운 국면전환을 위해서는 바로 시민사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이 점차 부각되고 있음.
- 세계적 미래학자인 피터 드러커는 현대사회의 다양해진 사회구성원의 요구를 포용하기 위해서는 국가체제가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을 시민사회 영역으로 이관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기도 함.
- 실제로 미국, 영국 등 많은 국가들에서는 국가운영의 파트너인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법률과 제도와 관행을 만들어가고 있음. 영국에서는 돈, 시간, 그리고 노력봉사를 더 내놓게 하는 ‘더 주는 시대’ 만들기를 선포함. 미국에서는 시간으로는 1주일에 다섯 시간, 기부금은 연수입 5%를 내는 Give-Five 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들어 현대적 의미의 기부활동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음. 짧은 기간이지만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은 성장을 이루어 옴. 하지만 우리사회를 보다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원동력으로서 기부활동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 특히, 비교적 불우이웃을 위한 나눔의 정신은 확고하지만 아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민사회의 공익활동 지원에는 그 인식이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음. 삼성과 현대에서 8000억과 1조원 등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대한적십자나 사회복지단체 등에는 기부금이 거의 들어오지 않고 있음.

- 많은 국민들이 각종 기부금을 부담하고 있지만 기부된 금액이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명백한 것은 더 가치가 많은 곳에 기부금이 모여질 것이라는 것임. 기부금 관련 단체에서도 더 효율적, 효과적으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우리 사회의 당면 현안 중 가장 큰 문제점은 단절과 배제의 문화임. 단절과 배제의 문화는 공동체의 붕괴와 사회 각 분야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주요인이 되고 있음. 최근에 급속히 진행 중인 가족해체와 공동체의 붕괴는 기존의 안전망 구실을 하던 가족주의적 상호부조 기능마저 약화시키고 있음.¹⁾
- 공동체 정신의 회복과 사회안전망 확충은 나라 경제를 튼튼하게 하고 동반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선순환적 효과를 가져옴. 우리나라처럼 제대로 된 시장경제가 작동되기 위한 인프라가 미비한 나라의 경우, 기부문화 등과 같이 시장실패를 보완해 줄 수 있는 민간영역에서의 기능이 마련되지 못한다면 시장실패는 훨씬 많은 사회적 약자를 만들어 내고, 양극화의 골도 더 깊어질 수밖에 없음.
- 기부문화, 나눔문화는 우리 사회를 지속 가능한 건강한 사회, 따뜻한 사회로 만드는 구심점임. 기부문화, 나눔문화를 활성화하고 확산시켜 정부의 실패를 보완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임.
- 이에 우리나라의 기부문화 실태를 알아보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방법 제시를 통해 함께하는 복지실현 방안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1) 이정우, '성장과 분배, 그리고 사회보장', 보건복지포럼, 2005. 2

함께하는 복지실현을 위한 방안

Ⅱ

민간복지 운영 현황 및 발전방향



1. 자원봉사의 운영 현황 및 발전방향

가. 자원봉사의 개념과 새로운 환경 변화

- 자원봉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나 기관에 대해 아무런 대가없이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말함. 일반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고, 동정심이 많고, 경제적으로 다소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생활에 곤란을 당하는 사람과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 및 각종의 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을 돕기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행위를 의미함.²⁾
- 최근에 와서는 ‘지역사회 발전과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사회활동’으로까지 그 의미가 확대되어 있음. 자원봉사자(Volunteer)라는 말은 ‘자유의지’란 뜻의 라틴어 ‘Voluntas’에서 나온 것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eer)을 ‘Volunteer’라고 부름.
- 자원봉사단체 등이 잘 발달된 미국과 같은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이 잘 조성되어 있지 않음. 이는 시민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소극적이고 정부와 관료에 대한 불신의 벽도 높기 때문임.
- 자원봉사와 같은 활동들은 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전반적인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음. 주민에 의해 자발적으로 개발·창조되고, 제도화되고, 사업화되어가는 정신임과 동시에 퇴폐와 비복지적인 요소를 정화시키고 변혁하여 온 정신이자, 실천적 활동임.

2) 봉민근, ‘사회복지부문에 있어 민간활력의 활용을 위한 정책대안’ 1998

- 공동체 혹은 지역사회에 있어서 주민들이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고 예방하며, 전인적 인간화와 복지공동체문화를 형성하는 것이기도 함. 공동의 복지목표(사랑, 평화, 행복)를 달성하기 위하여 무보수로 자발적으로 참여 혹은 지원하는 창조적, 가치적, 사회적 조화이기도 함.
- 최근 자원봉사와 관련해 새로운 환경 변화가 일고 있음. 복지국가의 위기로 국가가 공공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하던 체계는 한계에 이름. 이러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공서비스의 주체를 다원화해야 함. 다원화의 핵심은 공공재 생산 및 공급에 있어서 민간의 참여 확대, 곧 자원봉사자의 참여 확대임.
- 다음으로 삶의 질 추구의 문제임. 현대사회의 비인간성에 대한 탈피 노력으로서 삶의 질에 대한 새로운 욕구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오늘날 공공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는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높아졌으며, 특히 질적인 욕구가 부각되고 있음. 이러한 새로운 욕구에 대응하는 가장 효율성 있는 대안으로서 자원봉사활동이 제시되고 있음.
- 자원봉사활동은 복지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고 동시에 새로운 욕구에 대응하는 중요한 사회적 자본으로 인정되고 있음. 민관 파트너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지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의 부담을 시민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정부재정과 시민노력을 결합하여 시너지를 얻고자 하는 것임.
- 국가는 자원봉사의 자주성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시민참여를 촉진해야 함. 동시에, 시민 에너지를 국가 에너지로 변환하기 위한 사회적 장치로서 자원봉사센터와 같은 중간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이는 국가적 차원의 필요성

에 따른 것이며, 국가는 간접적 방식으로 지원해야 할 책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우리나라의 자원봉사활동은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선진 여러 국가들에 비할 때 자원봉사 인프라, 관련 기관간의 연계협력 및 정보 공유 시스템, 종합적 수급관리, 자원봉사자의 안전사고와 보호대책, 국가나 지자체의 행·재정 지원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미흡함.

나. 복지부 자원봉사 및 자원봉사인증관리 현황

- 사회복지협의회 부설 사회복지정보센터는 2001년 11월부터 자원봉사인증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전국 사회복지분야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관리하고 있음. 사회복지시설·단체·법인 및 기업 등 소속 자원봉사자의 활발한 참여 속에 인증관리사업을 운영 중에 있음.
- 2001년 11월부터 2005년12월까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보건복지부의 위탁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자원봉사인증관리사업”에 등록된 인증센터는 2005년 12월말 현재 2,144개소임. 2005년도 한 해 동안 활동한 자원봉사자는 34만5,064명이며, 이들의 봉사실적을 합한 연간 봉사횟수는 208만7,492회임.

• • 자원봉사인증관리사업 현황 • •

(2005년12월말)

구 분	인증센터	인증요원	자원봉사자	연간봉사횟수	연간봉사시간
자원봉사인증센터 (16개 시·도)	2,144개소	4,808명	345,064명	2,087,492회	8,043,573시간

※자료 : ‘자원봉사인증관리사업 현황’, 보건복지부, 2006. 9

- 한편 16개 시·도 사회복지협의회의 부설형태로 사회복지정보센터가 1991년부터 개설되어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음. 1994년에는 한국 사회복지협의회에도 사회복지정보센터가 설치되어 자원봉사에 관한 정책 연구, 조사, 자원봉사관리자 교육, 전산망구축 운영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³⁾

3) ‘2005년도 보건복지백서’, 보건복지부, 2006

• • 연도별 · 시도별 자원봉사실적 현황 • •

(단위: 명)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도			2005년		
	봉사 자수	봉사 횟수	봉사 시간	봉사 자수	봉사 횟수	봉사 시간	봉사 자수	봉사 횟수	봉사 시간	봉사 자수	봉사 횟수	봉사 시간
계	111,226	1,138,260	5,141,878	232,338	2,317,826	7,964,696	423,088	4,085,727	13,917,325	885,019	2,087,492	18,073,859
서울	15,739	227,760	760,838	27,926	407,066	1,338,290	56,097	686,366	2,250,937	136,723	359,986	3,437,216
부산	8,896	142,865	425,238	17,518	297,875	886,664	29,043	508,439	1,515,295	53,656	212,392	1,600,558
대구	7,689	95,620	297,444	12,204	160,162	489,581	19,199	248,812	778,243	39,392	116,347	981,649
인천	6,172	87,701	255,480	12,142	189,689	604,618	20,487	314,575	1,042,049	37,597	120,276	1,019,255
광주	9,990	76,629	261,821	24,583	165,838	585,515	46,270	307,206	1,135,423	83,501	170,991	1,589,859
대전	7,051	41,166	156,682	17,112	90,579	342,728	27,814	149,750	572,238	46,111	69,563	740,082
울산	2,112	22,003	62,590	4,611	58,490	164,455	7,645	99,475	277,970	19,563	68,887	417,083
경기	13,077	108,996	457,623	27,873	223,320	880,219	46,867	386,933	1,430,741	99,670	178,956	2,010,344
강원	2,704	39,523	1,377,682	5,045	77,416	280,071	10,470	148,633	531,549	21,215	95,660	689,912
충북	2,582	40,303	148,752	4,839	75,465	282,168	9,185	127,341	483,443	20,201	70,043	610,272
충남	4,994	31,604	119,139	9,629	58,990	220,158	20,378	106,640	397,427	44,588	70,927	577,415
전북	3,345	30,472	94,689	8,728	72,625	225,621	17,763	147,771	474,585	35,431	82,523	712,163
전남	10,795	87,259	381,857	23,948	187,303	834,828	42,944	329,641	1,473,571	70,598	168,278	1,622,342
경북	7,858	49,236	163,289	14,799	109,545	369,742	28,325	202,335	678,761	52,933	122,512	959,146
경남	6,178	42,241	130,309	16,835	106,217	339,514	31,794	194,387	630,035	56,590	126,821	834,703
제주	2,044	14,882	48,445	4,546	37,246	120,524	8,807	77,423	245,058	17,250	53,330	271,860

※자료 : ‘연도별 · 시도별 자원봉사실적 현황’, 보건복지부, 2006. 10

• • 연도별 · 시도별 인증요원 교육현황 • •

(단위: 명)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8월	
	교육 횟수	교육 인원	교육 횟수	교육 인원	교육 횟수	교육 인원	교육 횟수	교육 인원	교육 횟수	교육 인원
계	31	330	151	1,071	303	2,188	464	3,498	620	6,181
서울	2	3	22	121	35	222	61	448	83	741
부산	3	29	6	58	14	142	18	180	20	210
대구	2	13	13	81	21	140	31	190	35	275
인천	1	8	14	68	20	128	32	216	39	364
광주	1	23	12	79	24	116	41	245	53	589
대전	4	29	12	108	21	211	26	257	34	348
울산	1	17	7	35	11	75	16	125	28	297
경기	3	51	15	138	30	260	50	391	64	632
강원	1	13	3	26	6	73	8	140	19	437
충북	1	19	3	39	14	92	24	128	39	198
충남	2	39	8	79	16	131	23	204	30	368
전북	4	40	10	58	21	161	25	236	31	411
전남	2	22	10	62	28	155	42	246	57	415
경북	1	16	5	71	10	100	15	206	22	328
경남	2	3	8	37	25	147	33	208	43	362
제주	1	5	3	11	7	35	19	78	23	206

※자료 : '연도별 · 시도별 인증요원 교육현황', 보건복지부, 2006. 10

다. 대한적십자사 자원봉사 현황⁴⁾

□ 대한적십자사의 자원봉사현황을 보면, 2005년 말 현재 봉사조직은 일반봉사
회 2,765개, 전문봉사회 114개, 후원조직 44개를 포함해 모두 2,923개임. 봉
사인원수는 5만5,914명임.

4) 대한적십자사의 「2005년도 사업보고서, 2006」를 인용하여 재구성한 것임.

• • 대한적십자사 봉사조직 현황 • •

구분	조직	인원수
합계	2,923개	55,914명
일반봉사회	2,765개	52,152명
전문봉사회	114개	2,690명
후원조직	44개	1,072명

※자료 : '대한적십자사 봉사조직 현황', 대한적십자사, 2006. 8

- 연령별 현황을 보면, 40세이상 50세미만 봉사자사 2만2,472명으로 전체 40.2%를 차지하고 있으며, 50세이상 60세미만은 1만7,245명(30.8%), 30세이상 40세미만은 7,325명(13.1%)임. 20세이상 30세미만 젊은층은 986명으로 1.7%에 불과함.

• • 대한적십자 봉사인원 연령별 현황 • •

구분	인원(명)	구성비(%)
20세 ~ 30세	986	1.7
30세 ~ 40세	7,325	13.1
40세 ~ 50세	22,472	40.2
50세 ~ 60세	17,245	30.8

※자료 : '대한적십자 봉사인원 연령별 현황', 대한적십자사, 2006. 8

- 성별 현황을 보면, 여성이 4만4,840명으로 전체 80.2%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비해 여성은 1만1,074명으로 19.8%에 불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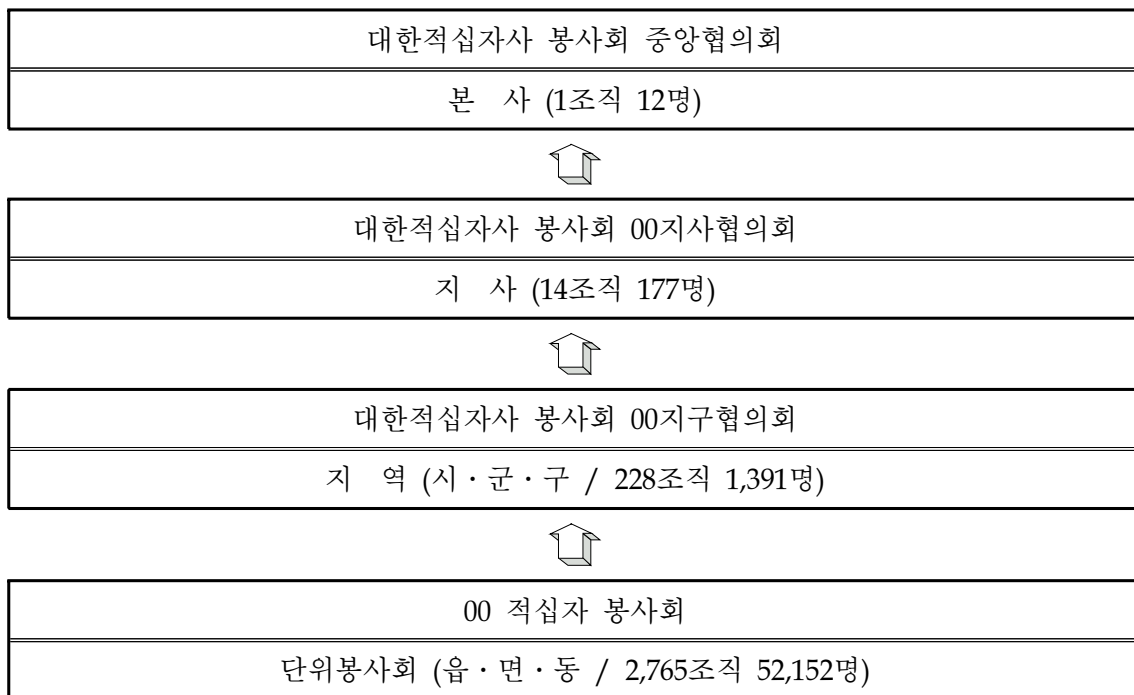
• • 대한적십자사 봉사인원 성별현황 • •

구분	인원(명)	구성비(%)
남성	11,074	19.8
여성	44,840	80.2

※자료 : '대한적십자사 봉사인원 성별현황', 대한적십자사, 2006. 8

- 대한적십자사의 일반봉사조직을 살펴보면, 가장 아래에 단위봉사회가 있음. 이는 1조직당 15인 내외로 구성되며, 모든 봉사활동의 주체가 됨. 다음으로 지구협의회가 있음. 시·군·구 기준으로 5개 이상의 단위봉사회 연합체로서 지역내 연합활동을 통해 봉사활동을 발전시킴. 지사협의회는 지구협의회 연합체로 각 지사별로 구성되며 지구협의회를 관장하며 연합 봉사활동을 전개함. 중앙협의회는 지사협의회 연합체로 본사에 1조직으로 구성되고 지사협의회 활동을 지원하며 봉사회 발전 대책을 협의함.

• • 대한적십자사 일반봉사조직 체계 • •



※자료 : ‘대한적십자사 일반봉사조직 체계’, 대한적십자사, 2006. 8

- 대한적십자사의 봉사활동을 살펴보면 구호활동, 보건·혈액사업 지원, 청소년·노인·장애인 복지활동, 회비모금 및 홍보활동, 환경보호 활동, 지역사회 복지활동, 국제협력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2005년 각 봉사활동별 활동비율을 보면, 구호활동은 27.9%, 노인복지활동이 27.8%, 지역사회 복지활동이 24.1%로 20%를 넘음. 이에 비해 장애인복지활동 6.4%, 보건·혈액사업 지원 6.2%, 청소년 복지활동 2.5%, 회비모금 및 홍보활동, 환경보호 활동이 각각 2.2%, 국제협력활동은 0.7%로 10%이하로 저조함.

● ● 대한적십자사 봉사활동 프로그램 실적 ● ●

구분	내용	2005년 실적 (회수/대상인원)	활동 비율(%)
구호활동	재해구호, 취약계층구호, 무료급식소 운영, 도시락·반찬배달 등	54,936/1,244,058	27.9%
보건·혈액 사업지원	병원·혈액원봉사, 헌혈캠페인 등	11,764/277,886	6.2%
청소년 복지활동	소년소녀가장 돕기, 청소년 자원봉사 교육지원 등	8,305/110,347	2.5%
노인복지 활동	적십자 어버이결연 봉사활동, 노인교실운영, 노인복지시설 위문, 노인생활체조 보급 등	38,571/1,241,343	27.8%
장애인 복지활동	장애인 결연봉사, 각종 장애인 행사 안내·음료·급식봉사, 점자도서 및 녹음도서 제작 등	10,443/284,232	6.4%
회비모금· 홍보활동	적십자 회비모금 지원 및 민원 전화 상담, 봉사회 활동 홍보 등	3,609/99,606	2.2%
환경보호 활동	환경보호 캠페인, 환경정화활동 등	5,666/97,260	2.2%
지역사회 복지활동	새터민 정착지원활동, 재활용매장 운영, 군병원봉사실 운영 등	50,507/1,076,294	24.1%
국제협력 활동	국제구호, 북한동포지원 등	1,526/29,314	0.7%

※자료 : ‘대한적십자사 봉사활동 프로그램 실적’, 대한적십자사, 2006. 8

라. 자원봉사센터 현황

1)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우리나라 자원봉사센터는 그동안 산발적으로 추진되어온 자원봉사활동을 전 문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됨. 1996년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설치하기 시작하여 2005년말까지 250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를 완료함. 자원봉사센터의 운영형태는 직영과 민간위탁으로 분류되고, 세부적으로 완전직영형, 혼합직영형, 개별단체위탁형, 협의회위탁형, 별도법인형으로 구분됨.

• • 자원봉사센터 운영형태 • •

구 분		운영주체	직 원	센터소장
직 영	완전직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자치단체장 또는 없음
	혼합직영	지방자치단체	민간인	비상근 민간인
민간위탁	개별단체위탁	개별민간단체	민간인	단체대표자겸직
	협의회위탁	봉사단체협의회	민간인	협의회장겸직
	별도법인	사단법인	민간인	법인대표 또는 별도임명

※자료 : ‘자원봉사센터 운영형태’, 행정자치부, 2006. 7

- 조례제정 현황을 보면, 2004년 대비 7개소(4%)가 증가한 207개 지방자치단체(82.8%)가 조례를 제정하였음. 지방자치단체의 직영은 지난해 대비 9개소(6.6%)가 증가한 146개소(58.4%)이며, 위탁운영은 지난해 대비 7개소(7%)가 감소한 95개소(38%)이고, 법인운영은 지난해 대비 2개소(18%)가 감소한 9개소(3.6%)임.
-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인력은 2004년 대비 34명(4.6%)이 증가한 768명(센터당 3명)이며, 이중 공무원은 지난해 대비 20명(10%)이 증가한 211명(27.5%)이며, 민간인은 지난해 대비 14명(2.6%)이 증가한 557명(72.5%)임.

• • 자원봉사센터 연도별 운영 내용 • •

(단위 : 개소/명)

연도	조례 제정	운영형태				상근인력		
		계	직영	위탁	법인	계	공무원	민간인
'03. 12	170	248	140	99	9	694	208	486
'04. 12	200	250	137	102	11	734	191	543
'05. 12	207	250	146	95	9	768	211	557

※자료 : '자원봉사센터 연도별 운영 내용', 행정자치부, 2006. 7

- 봉사인력 557명(남 183명, 여 374명)에 대해 분석해 보면,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가 129명(23.1%), 대졸이 358명(64.3%), 대학원졸 이상이 70명(12.6%)임. 연령별로는 30세미만이 125명(22.4%), 40세미만이 223명(40%), 50세미만이 136명(24.4%), 60세미만이 49명(8.8%), 60세 이상이 24명(4.3%)임.

• • 자원봉사센터 종사자 학력 및 연령 현황 • •

(단위 : 명)

연도	학력별				연령별					
	계	고졸 이하	대졸	대학원 이상	계	30세 미만	40세 미만	50세 미만	60세 미만	60세 이상
'03. 12	486	139	283	64	486	146	175	106	38	21
'04. 12	543	127	343	73	543	153	193	121	51	25
'05. 12	557	129	358	70	557	125	223	136	49	24

※자료 : '자원봉사센터 종사자 학력 및 연령 현황', 행정자치부, 2006. 7

- 근무기간별 현황을 보면, 1년미만이 138명(24.8%), 2년미만이 104명(18.7%), 3년미만이 113명(20.3%), 3년이상이 202명(36.2%)임. 급여수준별로는 무급이 24명(4.3%), 1천만원 미만인 92명(16.5%), 2천만원미만이 279명(50.1%), 3천만원 미만인 128명(23%), 3천만원 이상이 34명(6.1%)임. 2004년 대비 2천만

원 미만은 454명(83.6%)에서 395명(71%)으로 감소하고, 2천만원 이상은 89명(16.4%)에서 162(29%)명으로 증가하여 센터종사자의 처우가 점차 개선되고 있음.

• • 자원봉사센터 종사자 급여 및 근무기간 현황 • •

(단위 : 명)

연도	급여수준별						근무기간별				
	계	무급	1천 미만	2천 미만	3천 미만	3천 이상	계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3년 이상
'03. 12	486	37	121	269	46	13	486	205	98	51	132
'04. 12	543	66	158	230	72	17	543	154	150	86	153
'05. 12	557	24	92	279	128	34	557	138	104	113	202

※자료 : '자원봉사센터 종사자 급여 및 근무기간 현황', 행정자치부, 2006. 7

2) 자원봉사센터 예산편성 및 집행 현황

□ 자원봉사센터의 2005년 예산액은 32,806,079천원으로 2004년 대비 3,586,450천원(12.2%)이 증가함. 시군구비가 22,664,379천원(69%), 시도비가 8,027,357천원(25%), 자체예산이 2,114,343천원(6%)임.

• • 자원봉사센터 연도별 예산 현황 • •

(단위 : 천원)

연 도	계	교부세	시도비	시군구비	자체예산
2003년	24,637,715	4,000,000	4,701,858	14,927,478	1,008,379
2004년	29,219,629	2,000,000	5,727,937	20,076,166	1,415,526
2005년	32,806,079		8,027,357	22,664,379	2,114,343

※자료 : '자원봉사센터 연도별 예산 현황', 행정자치부, 2006. 7

- 자원봉사센터별 평균예산은 1억3,122만4천원으로 광역센터는 평균 3억2,644만원, 기초센터는 1억1,787만6천원임. 최고는 경기도 자원봉사센터로 12억7,500만원이며, 최저는 울산광역시 중구 자원봉사센터로 100만원임.

• • 각 센터별 평균 및 최고·최저 예산 현황(2005년) •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총액	센터별 평균예산	센터별 최고 · 최저예산	
			최 고	최 저
전 국	32,806,079	131,224	1,275,000(경기도 센터)	1,000(울산 중구센터)
광역센터	5,223,054	326,440	1,275,000(경기도 센터)	21,750(경남도센터)
기초센터	27,583,025	117,876	985,426(충북 단양군센터)	1,000(울산 중구센터)

※자료 : '각 센터별 평균 및 최고 · 최저 예산 현황', 행정자치부, 2006. 7

- 2005년 12월말 현재 예산집행액은 '04년 대비 37억6,133만4천원(13.9%) 증가한 307억7,891만9천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93.8%가 집행되었으며, 집행 잔액은 20억2,716만원(6.2%)임. 인건비가 94억1,998만4천원(30.6%), 봉사활동비가 83억6,341만7천원(27.2%), 운영비가 44억6,926만5천원(14.5%) 등으로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가 138억8,924만9천원으로 전체 집행액의 45.1%를 차지함.

• • 자원봉사센터 사업별 예산 집행내역 • •

(단위 : 천원)

연도	계	센터설치	봉사활동	보험가입	협조체계	특수시책	인건비	운영비	기 타
'03. 12	22,512,772	731,583	5,513,120	725,836	845,478	2,425,730	5,542,235	3,375,065	3,353,725
'04. 12	27,017,585	604,342	5,843,910	844,125	971,859	2,782,959	7,563,389	4,198,627	4,208,374
'05. 12	30,778,919	824,275	8,363,417	987,732	1,243,310	3,228,419	9,419,984	4,469,265	2,242,517

※자료 : '자원봉사센터 사업별 예산 집행내역', 행정자치부, 2006. 7

3) 자원봉사자 등록 및 활동현황

- 자원봉사자 등록인원은 2,083,704명(센터당 평균 8,334명)으로 2004년 대비 360,881명(20.9%)이 증가함.

• • 자원봉사센터 연도별 자원봉사자 등록 현황 • •

(단위 : 명)

구 분	'01. 12	'02. 12	'03. 12	'04. 12	'05. 12
등록 인원수	1,166,601	1,343,693	1,489,009	1,722,823	2,083,704

※자료 : '자원봉사센터 연도별 자원봉사자 등록 현황', 행정자치부, 2006. 7

- 성별로는 남자 900,214명(43.2%), 여자 1,183,490명(56.8%)이고, 연령별로는 40대가 495,536명(23.8%)으로 가장 많음. 연령별로는 20세미만이 461,728명(22.2%), 50대가 345,960명(16.6%), 30대가 291,274명(14%), 20대가 280,234명(13.4%), 60세이상 208,972명(10%) 순으로 나타남.

• • 자원봉사자 성별·연령별 현황 • •

(단위 : 명)

연 도	총 계	성 별		연 령 별					
		남	여	20세미만	30세미만	40세미만	50세미만	60세미만	60세이상
'03. 12	1,489,009	643,765	845,244	331,372	171,411	243,602	380,648	240,983	120,993
'04. 12	1,722,823	755,613	967,210	389,037	217,903	264,024	420,595	270,517	160,747
'05. 12	2,083,704	900,214	1,183,490	461,728	280,234	291,274	495,536	345,960	208,972

※자료 : '자원봉사자 성별·연령별 현황', 행정자치부, 2006. 7

- 직업별 현황을 보면, 주부가 502,577명(24.1%), 중고생이 433,299명(20.8%), 회사원이 197,828명(9.5%), 자영업이 173,199명(8.3%), 대학생이 120,459명(5.8%), 서비스업이 100,827명(4.8%), 공무원이 43,413명(2.1%), 기타가 477,075명(22.9%)임. 주부 및 학생이 절반 이상을 차지함.

● ● 자원봉사자 직업별 현황 ● ●

(단위 : 명)

연도별	총 계	직업별								
		주 부	회사원	공무원	서비스	자영업	퇴직자	대학생	중고생	기 타
'03. 12	1,489,009	430,921	132,446	41,992	91,372	161,731	35,829	84,057	322,482	188,179
'04. 12	1,722,823	455,042	164,270	34,556	82,431	165,373	26,770	111,762	352,463	330,156
'05. 12	2,083,704	502,577	197,828	43,413	100,827	173,199	35,027	120,459	433,299	477,075

※자료 : '자원봉사자 직업별 현황', 행정자치부, 2006. 7

-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 실적은 7,634,183명으로 '04년 대비 2,049,574명(37%)이 증가함. 자원봉사센터등록 자원봉사자 1인의 자원봉사활동 횟수도 전년 대비 0.42회가 증가한 3.66회의 자원봉사활동을 함.
- 활동분야별로는 사회복지분야가 2,711,283명(36%), 환경보호분야가 1,632,872명(21%), 교통질서분야가 688,762명(9%), 공공기관분야가 619,634명(8%), 의료시설분야가 307,252명(4%), 구조구급 및 재해복구분야가 245,749명(3%), 기타분야가 1,428,627명(19%)으로 활동범위가 다양해지고 있음. 그러나 2004년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 및 환경보호분야의 봉사활동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 • 자원봉사활동 분야별 현황 • •

(단위 : 명)

연도별	총 계	분 야 별						
		사회복지	의료시설	환경보호	교통질서	구조구급 재해복구	공공기관	기 타
'03. 12	5,118,720	1,534,836	328,191	784,855	646,824	482,057	325,103	1,016,854
'04. 12	5,584,609	1,584,619	195,986	1,192,733	697,554	326,666	469,939	1,117,112
'05. 12	7,634,183	2,711,283	307,252	1,632,872	688,762	245,749	619,638	1,428,627

※자료 : '자원봉사활동 분야별 현황,' 행정자치부, 2006. 7

4) 자원봉사자 교육실적

□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은 기초교육, 재교육, 기술교육 등 3가지 유형으로 총 24,062회를 실시함. 2004년 대비 과정별 횟수는 12,193회에서 24,062회로 11,869회(97%) 증가하였으며, 참여인원은 564,785명에서 570,991명으로 6,206명(1.1%) 증가함.

□ 과정별로는 기초교육이 18,341회(76.2%), 재교육이 3,089회(12.8%), 기술교육이 2,632회(11%)를 실시함. 자원봉사센터 등록인원의 27.4%인 570,991명이 참가함. 기존 봉사자 (193,202명, 33.8%)보다는 신규봉사자(377,789명, 66.2%)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함.

• • 자원봉사자 교육실적 • •

(단위 : 횟수, 명)

연도별	교육 과정 별				참 여 인 원		
	계	기초교육	재교육	기술교육	계	신규봉사자	기존봉사자
'04. 12	12,193	8,488	1,772	1,933	564,785	412,992	151,793
'05. 12	24,062	18,341	3,089	2,632	570,991	377,789	193,202

※자료 : '자원봉사자 교육실적,' 행정자치부, 2006. 7

5) 고정수요자와 자원봉사자 연계실적

□ 고정수요자와 자원봉사자 연계실적은 '04년 대비 1,310,112건(240%)이 증가한 1,856,492건에 이름. 분야별로 보면 무료급식 분야가 379,938명(20%), 말벗돼주기 분야가 237,528명(12.8%), 식사배달 분야가 206,747명(11.1%), 목욕청소 분야가 200,713명(10.8%), 재가봉사 분야가 199,639명(10.7%), 간병간호 분야가 162,980명(8.8%), 이미용 분야가 99,755명(5.4%), 차량봉사 분야가 84,346명(5%), 기타 분야가 284,846명(15.4%)으로 대부분이 사회복지 분야임.

● ● 고정수요자와 자원봉사자 연계실적 ● ●

(단위 : 명)

연도별	계	식사 배달	목욕 청소	말 벗 돼주기	간 병 간 호	이미용	무료 급식	재가 봉사	차량 봉사	기 타
04. 12	546,380	87,189	83,887	64,626	28,391	43,401	55,586	44,840	19,683	118,777
05. 12	1,856,492	206,747	200,713	237,528	162,980	99,755	379,938	199,639	84,346	284,846

※자료 : '고정수요자와 자원봉사자 연계실적', 행정자치부, 2006 .7

마. 자원봉사활동의 문제점⁵⁾

1) 전문인력의 부족

□ 늘어나고 있는 지역 사회내 복지수요에 비하여 실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인력이 부족함. 뿐만 아니라 의사, 약사, 간호사, 변호사 등 전문

5) 봉민근, '사회복지부문에 있어 민간활력의 활용을 위한 정책대안', 1998

성을 가진 인력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부족함. 이로 인해 실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재가복지대상자, 저소득계층에 대하여 실제적인 봉사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2) 교육의 전문성 결여

- 대한적십자사의 경우 봉사원에 대하여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타 단체의 경우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전 소양교육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참여 당시의 의욕에 비하여 실제 봉사활동을 할 때에는 상황별 적응력이 부족하여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고 있음.

3) 양성 및 관리체계 미흡

- 자원봉사자를 양성, 관리하는 민간차원의 종합전담기구가 없음. 개개 자원봉자의 전문성, 적성, 희망 등을 고려한 복지수요의 분야별 적기 적소 배치가 어려워 비효율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우리나라 자원봉사센터는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국무총리실 청소년위원회, 여성가족부 등에서 지원하는 센터가 각각 설치되어 있음. 이러한 자원봉사센터를 총괄할 수 있는 기구가 부재함.

• • 부처별 자원봉사센터 현황 • •

구 분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청소년위원회	여성가족부	교육인적자원부
센터명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정보센터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여성자원활동센터	1)지역평생교육센터 2)학생봉사활동정보안내센터
법인 여부	직영또는민간위탁	한국사회복지협의회위탁	민간위탁/직영(충북)	지자체직영(여성정책과)	지자체직영
근거	행자부지침/조례	사회복지사업법제9조	청소년기본법시행령제4조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제28조의2	지침
주요 기능	자원봉사자모집,배치	사회복지 자원봉사	청소년자원봉사	여성자원봉사	퇴직교사및학생, 대학생봉사활동
주요 재원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	청소년육성기금	여성발전기금	특별교부금

※자료 : ‘부처별 자원봉사센터 현황’, 행정자치부(안명옥의원 재구성), 2006. 7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비전문성 및 단조로움

□ 자원봉사활동에서 프로그램은 여러 분야에 걸쳐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고, 자원봉사 수요자에게 필요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매우 중요함. 하지만 우리나라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노력봉사나 각종 행사보조, 불우 이웃방문 가사원조 등의 비전문적인 단순 노동에 치중하고 있음.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자원봉사 활동의 단조로움으로 봉사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기에는 부족함.

□ 이와 더불어 자원봉사활동도 지방자치 시대에 맞게 지역사회의 특성에 따른 프로그램이 필요함. 예를 들어 노령화가 심각한 지역의 경우에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과 노인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함.

5) 봉사계획 수립 및 기록 관리의 문제

- 우리나라 자원봉사 활동은 장·단기 계획수립 미흡함. 이로 인해 자원봉사자들의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이끌어 내는데 어려움이 있음. 자원봉사센터의 운영현황, 자원봉사자 관련자료 등 자원봉사에 관한 전반적인 기록이 미흡함. 남아있는 기록들도 단편적이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만들어지고 나면 나중에 보존이 되어 있지 않아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바. 외국의 자원봉사 사례 : 외국 적십자사의 사례를 중심으로

1) 일본의 자원봉사활동

- 일본의 자원봉사 활동의 특징은 초기단계부터 다양한 공적 시책들에 의해 주도되어 왔음. 지역사회 중심의 지역복지 개념의 실천이 지배적임.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봉사활동·직장봉사활동의 육성과 함께 자원봉사 활성화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자원봉사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고방지 대책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자원봉사 보험에서 제반경비를 충당하고 있음.
- 자원봉사활동의 생활화를 위하여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부터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음. 청소년을 위하여 '자원봉사 협력학교'를 지정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음. 마을 단위로 정부·사회복지기관·단체·학

교·기업 등이 모두 나서 불우이웃을 돕는 지역사회 보호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는 복지마을 운동에 협력학교 학생들의 자원봉사가 큰 도움이 됨.

- 정부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동시에 지역사회 중심의 자원봉사 시민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는데 「VYS운동(Voluntary Youth Social Worker's Movement)」⁶⁾이 좋은 사례가 되고 있음. VYS운동은 청소년 건전육성 활동, 어린이회 활동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이 조직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국제적인 규모로서 운동을 전개하고 있음. 이 운동의 행동강령은 「우애·봉사·이상」으로 정해 두고 있는데, 이것은 자원봉사 활동을 유지하는 3대 기둥임.
- 「부인등불운동」 역시 처음에는 아이매현의 부인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자원봉사 활동이었는데 지금은 주민전체의 운동으로 채택되고 있는 자치적 활동임. 즉 등불을 우리들의 마음과 어두운 거리에 내걸어 밝은 고장을 만들자는 것임.

2) 프랑스의 자원봉사활동

- 프랑스의 자원봉사 활동은 철저히 순수 민간단체가 주도하고 있음. 자원봉사활동은 인도주의 전반에서 활동하는 '적십자'나 분야별로 세분화된 '세계의 의사회', '마음의 식당(부랑인 급식)' 등 모두 8백여개의 순수 민간단체로 이루어짐. 이들 단체에서 일하는 자원봉사자 수만도 인구의 10%가 넘는 7백여만명에 이름. 기타 마을단위 등에서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것까지 합

6) 자원청년 사회사업가에 의해 전개되는 「VYS운동(Voluntary Youth Social Worker's Movement)」은 1952년 아이매현에서 일어나 곧 전국적인 조직으로 성장한 일본특유의 자원봉사 활동임.

치면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자원봉사자는 국가기관이나 개별 단체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나 보통 자신의 사회경험을 바탕으로 소양교육 정도를 습득한 후 적성에 맞는 봉사활동에 투입되는 것이 일반적임.

- 프랑스 적십자의 경우 전국에 1백6개의 보건 및 사회 교육센터를 직접 운영하며 응급처치, 장애인 돌보기 등 기초교육을 중심으로 매년 9천명의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고 있음. 한달 정도의 기초교육을 마친 사람들이 적십자의 10만 자원봉사자로 일하고 있음. 마약 상습복용 등 나머지 전문분야는 사회에서 실제경험이 있는 사람이 맡고 있음.
- 국가는 자선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 주는 선에서 그 역할을 한정하고 있음. 물론 정부예산에 편성돼 있는 사회복지비로 재정지원하고 자선단체들이 운영하는 3만3천개의 침상을 갖춘 숙박시설에 연간 19억여프랑을 내놓고 있음. 그러나 국가는 단체의 기금사용에만 감독할 뿐 회원의 활동에는 전혀 간섭할 수 없으며 운영비나 기금마련을 위한 수익활동에 감세 혜택을 주는 정도에 그침.
- 프랑스 자원봉사활동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기부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국가의 주도적 지원체제로 운영되는 다른 나라들과 다름. 2005년 순수 인도주의 차원의 기부금으로 모인 금액은 모두 95억프랑(약1조3천여억원)임. 프랑스 한 가구가 내는 평균 기부금이 연간 1천76프랑(15만여원)에 달하고 질병(56%) 사회봉사(24%) 교회(21%) 국제구호(15%)에 각각 쓰인 것으로 나타남.
- 몸으로 참여할 수 없을 경우 자선단체가 활동할 수 있도록 돈으로 후원해야 한다는 생각임. 개인 기부금의 경우도 전체 소득의 5%안에서만 60%의

감세혜택이 부여되는 것이 고작이어서 무엇을 바라고 기부하는 행태와는 차이가 큼.

- 프랑스 자원봉사의 또 하나 다른 특징은 국내활동과 별도로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인 자원봉사가 활발하다는 것임. 연간 25억프랑의 기부금이 제3세계의 난민이나 이재민을 위해 걷히고, 르완다 사태의 경우 적십자, 가톨릭구원회, 세계의 의사회 등에서 민간 자원봉사자들이 대거 현지에 투입된 바 있음. 또 개인들과 별도로 기업들도 자선단체활동을 지원하는데 적극적임.
- 결국 프랑스의 자원봉사는 ‘자기가 좋아서 하는’ 순수한 의미의 봉사관행이 정착돼 있음.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보편화 돼 자선단체와 봉사자와 기금이 균형을 이루며 자연스럽게 굴러가고 있음.

3) 미국의 자원봉사활동

- 미국은 ‘제4의 물결’이라는 ‘자원봉사 물결’이 일고 있음. 그들은 지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함께 창조하는 공동체’를 만들고 있음. 탈경제화 사회가 시작되는 21세기를 바로 앞에 둔 90년대에 들어와 미국의 자원봉사 활동은 질적, 양적인 면에서 더욱 활성화되고 있음. 이를 위해 정부 및 각급 교육기관, 그리고 기업체 등은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총력전을 펴고 있음.
- 1993년 통계에 의하면 전체 인구의 48%에 달하는 8천9백20만명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기록을 나타냄. 이들의 주당 평균 참여시간은 4.2시간으로 나타남. 이러한 자원봉사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주로 젊은 세대들에

게 최대한의 자원봉사 경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지역사회를 형성하고 질적인 삶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음. 이를 통해 젊은이들에게 연속적인 자원봉사 행동의 습관을 심어 주자는 의도가 담겨 있음.

- 미국 미네소타 주의 워크 어바웃(Work About) 프로그램은 미네소타 주의 미니애폴리스 시에서는 지난 1988년부터 매년 서머스쿨을 이용하여 워크 어바웃 프로그램을 실시해 오고 있음. 워크 어바웃 프로그램은 관내 대학교와 고등학교의 협조를 받아 자원봉사 프로젝트를 계획한 뒤, 한 명의 고교생이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5학년까지 학생 6명을 맡아 한 그룹을 이루고, 대학생은 이러한 그룹 2개를 맡아 한 조를 이루며, 다시 초등학교 교사가 대학생 2개조를 맡아 한 팀을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있음.
- 즉 한팀은 초등학교 교사 1명, 대학생 2명, 고등학생 4명, 그리고 24명의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으로 구성되는 피라미드 식 조직이 됨. 이렇게 조직된 팀은 6명의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으로 구성된 그룹을 기본활동 단위로 함. 자원봉사를 위한 준비와 행동 및 반성의 단계를 거쳐, 새로운 준비 단계로 들어가도록 되어있음.
- 연방정부와 사회단체들은 이미 20여년 전부터 'K-12'(유치원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프로그램)라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만들어 청소년들이 어려서부터 즐겁게, 그리고 보람을 느끼며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왔음. 특히 1990년대 젊은이들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가능케 한 첫째 요인은 정부가 입법을 통해 종전에 비해 보상체계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는 것임.

- 클린턴 정부는 1993년 미국의 자원봉사제도를 개혁하면서 학생자원봉사활동을, 특히 교육과정에 통합시키는 방안을 구체화함. 1994년에는 사회봉사법 입법에 따라 종래의 VISTA를 통합해 ‘미국봉사단(Americorps)’이라는 전일제 및 시간제 자원봉사단을 만들어 10개월 봉사 후에는 장학금 또는 직업훈련기회를 제공하는 보상제도를 확립함. 대학생·대학중퇴자·고등학교 졸업생들을 자원봉사자로 적극 활용하고 있음.
-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시장실 직속 ‘자원봉사운동센터’를 설치하거나 조정관을 임명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해주고 있기도 함. 또한 복합적 사회에서 수많은 단체와 조직에 의해 산만하게 전개되고 있는 민간부문의 자원봉사활동을 교통정리 하는 역할 수행하고 있음.
- 정부에 의해 주도되는 자원봉사활동에 있어 흔히 제기되는 문제점으로는 자원봉사자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염려가 있다는 것과 민간에 의해 전개되고 있는 봉사활동을 위축될 수 있다는 것임. 그러나 자원봉사활동의 정부개입에 대한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지역사회와 국가를 위한 자원봉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고 심각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고 있음.

사. 자원봉사활동의 개선 및 활성화방안

1) 자원봉사활동의 제도적 육성을 위한 법률 정비 필요

- 미국의 국내자원봉사법, 전국 및 지역사회봉사법이 좋은 사례임. 자원봉사법안에 반영해야 할 주요 골자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와 종류를 규정하고

정치적 중립성 등 법적 준거를 제시하여야 함. 또한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육성을 위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기구, 민간단체 협의체 등의 설치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자원봉사자 수급관리 체계에 관한 제도적 틀을 갖추어야 함. 특히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각종 사회적 혜택 등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자원봉사법안의 핵심이라 할 수 있음.

2)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식 개선 필요

□ 우리나라의 경우 역사적으로 볼 때 상부상조의 아름다운 전통들이 많이 있음. 마을 안에 중병환자, 불구자, 과부, 초상집이 있으면 공동으로 그 집의 농사를 지어 주거나 마을의 흥사가 있을 때 무보수로 봉사해주던 일, 그리고 궁핍한 사람들이 연대하여 춘궁기를 보내던 일, 이외에 계, 향약, 두레, 품앗이 등 마을 공동체를 일궈나가는 아름다운 습속들이 많이 있었음. 이러한 문화를 오늘날에 되살릴 수 있다면, 지역 공동체 안에서의 자원봉사활동의 훌륭한 기반이 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각급 공공기관, 학교, 기업, 봉사단체에서 지원활동을 일상적으로 전개하도록 권장하고 자원봉사 교육프로그램을 확산시켜 나가야 함. '자원봉사의 날', '자원봉사이벤트 사업추진', '자원봉사주간' 지정운영, 자원봉사자에 대한 표창격려, 각종 매체를 활용한 공익광고 등을 통해 자원봉사마인드를 지속적으로 함양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함.

3) 자원봉사자의 효율적인 활용 필요

□ 자원봉사자들을 선정할 때 그들의 가정환경, 사회경험, 소지하고 있는 기술 등을 고려하여 봉사프로그램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하고 적절한 직책에 배

치해야 함. 또한 이들이 자신의 직책과 역할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적절한 지도감독이 필수적임. 지도감독의 내용은 봉사활동에 필요한 제반 행정적인 절차검증, 전문적인 기술, 자원봉사자의 능력과 활동성과에 대한 평가 기회를 제공하는 것임.

- 자원봉사자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자원봉사자의 지원서, 이력서, 활동보고서, 평가서, 신상명세서 등의 자료는 자원봉사자들의 효과적인 배치, 봉사활동의 올바른 평가, 계속 활동시킬지의 여부 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음.

4)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재원의 확보

- 자원봉사활동의 재원조달방법에는 복지단체 등의 자체예산에서 지원하는 방법,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방법,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는 방법, 개인이나 기업체가 필요한 경비를 지원했을 때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방법 등이 있음.

2. 민간복지부문 재원 운영 현황 및 발전방향

가. 민간복지부문 재원 현황

1) 재원구분 및 외국현황

- 사회복지 재원은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으로 구분됨. 공공재원은 중앙, 지방 자치단체의 보조금임. 민간재원은 후원결연사업, 법인 수익금, 공동모금, 이용자 부담임. 영국이나 일본의 경우 주로 공공재원에 의존하고 있음. 그에 반해 미국은 각 지역단위로 공동모금화가 활성화되어 있어 공공재원과 민간재원 양측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은 편임.

2) 우리나라 사회복지 재원의 형태

- 우리나라는 과거 해외 원조나 민간부문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았음. 그러나 점차적으로 공공재원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져가고 있음. 가족 및 지역사회의 복지기능을 제고하고 민간부문의 재원확보를 강화함으로써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 및 재정 분담 원칙을 확립해 나가야 함.

나. 민간복지재원의 사례(1) : 사회복지공동모금회⁷⁾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설립 배경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 및 기타 사회복지활동을 지원하기 위하

7)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04년도 보건복지백서, 2005」를 인용하여 재구성한 것임.

여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모금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함. 지난 1975년부터 정부에서 주관 하던 이웃돕기모금사업이 1998년7월1일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시행됨. 동 사업이 민간단체로 이관되면서, 같은 해 전국공동모금회와 16개 지역공동 모금회가 설립되어 활동을 시작함.

- 1999년4월1일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으로 개정·시행되어 지원대상 사업의 적용 범위가 사회복지사업 및 기타 사회복지활동으로 확대됨. 개별 독립법인이던 지역공동모금회가 공동모금회 지회로 전환됨. 이와 함께 모금 및 배분사업의 전문성을 인정, 모금경비 및 관리운영비의 사용한도를 10% 이내로 대폭 확대하고, 예산안 및 사업계획도 보건복지부 승인 사항에서 보고 사항으로 개정하여 자율성을 확보함.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 현황

- 공동모금회의 모금사업은 연말연시 집중모금과 연중모금으로 구분되고 있음. 2003년12월1일부터 2004년1월31일까지 2개월간 “희망 2004이웃돕기캠페인”을 실시해 총 949억원(중앙 471억원, 지회 471억원, ARS모금 7억원)을 모금함.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모금액보다 5.8%가 증가한 것임. 또한 2004년1월1일부터 2004년12월31일까지의 연중모금은 전년 대비 27.0% 증가한 1,756억원을 모금함.
- 2005년12월1일부터 2006년1월31일까지 2개월간 ‘희망 2006 이웃사랑캠페인’을 실시해 총 1,579억원(중앙 959억원, 지회 620억원)을 모금하여 전년도 같은 기간 모금액보다 33.2%가 늘어남.

•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도별 모금 추이 •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	2004	2003	2001/2002	2000/2001
합 계	214,697	175,630	138,246	101,746	62,500
중 앙	116,401	80,526	70,281	44,283	32,115
지 회	98,296	95,104	67,965	57,463	30,385

※자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도별 모금 추이', 보건복지부, 2006. 8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 현황

- 2001~2002년도에는 937억원, 2003년도에는 1,192억원, 2004년도에는 1,453억원, 2005년에는 1,772억원을 배분하여 민간사회복지 지원으로는 최대의 규모를 배분함. 사업비 배분은 신청사업, 지정기탁사업, 기획사업, 긴급지원사업 등의 방법으로 다양하게 실시함.
- 신청사업은 전문프로그램 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아 심사한 후에 지원하고, 지정기탁사업은 기부자의 의도를 그대로 반영하는 사업이며, 긴급지원사업은 시급하게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곳에 배분함. 신청사업 지원과 함께 일반배분 사업에서 다루지 못했던 내용은 기획사업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 지원함.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사회복지 현안 중에서 정부나 민간이 쉽게 개입하지 못하는 사회복지 인프라를 구축 및 민간복지 전반의 폭넓은 변화를 촉진함.

• • 2004년 분야별 배분실적 • •

(단위: 백만원, %)

구분	2004 배분실적		2005년 배분실적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계	145,348	100	177,206	100
신청사업	9,433	6.5	10,749	6.1
기획사업	49,583	34.1	54,608	30.8
긴급지원사업	9,932	6.8	23,168	13.1
지정기탁사업	76,400	52.6	88,693	50.0

※자료: '2004년 분야별 배분실적 등', 보건복지부(안명옥의원 재구성)

4)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문제점

□ 첫째, 과도한 운영비 사용의 문제임. 2006년3월 현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중앙에 53명, 16개 지회에 125명 등 총 178명의 상근직원이 업무수행을 하고 있음. 전체 모금액의 10% 내에서 관리비용을 지출하고 있음. 이 금액은 총 모금액 2000억원 중 200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과도한 경비를 쓰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음.

□ 둘째, 의사결정의 모순 문제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조직체계에 있어 이사회에 최고의결권한이 주어진 것에 비해 이사회의 권한은 법률에 의거해 부여된 것일 뿐. 모금회의 실질적 주체인 기부자 및 수혜기관 전체의 직접적 의사가 투영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 모순이 있음.

□ 셋째, 국민들의 신뢰수준 저조의 문제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배분사업에 대해 사업 선정의 투명성을 묻는 질문에 투명하지 않다는 대답이 30.3%을 차

지하고 있음. 투명한 편이다(43.8%), 모르겠다(24.7%)의 답을 보이고 있음. 이는 모금회의 투명성에 대한 신뢰가 50%를 넘기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투명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임.

- 넷째, 지원받은 기관의 만족도 저조의 문제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은 기관들 역시 지원에 대해 매우 만족이 3.4%, 만족이 10.1%에 불과함. 이에 반해 불만족이 32.6%를 보여 지원에 대한 만족도 역시 저조함.

5)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개선방안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엇보다도 배분액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수준까지 모금액을 증대시키는 것과 모금의 출처를 안정화하는 것임. 이를 위해 모금방식의 전문성과 모금의 인프라를 확보하는 방안이 되어야 함.
- 첫째, 마케팅 전략의 개발임. 기업의 연말연시 고액 기부는 이제 어느 정도 한계에 달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집중모금 의존도는 모금증가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연중모금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하며 방법론적으로 구체적인 마케팅 전략 개발이 필요함.
- 즉, 자원동원을 더 이상 선의에 의한 자선적 기부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기부자들의 기부 동기와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여 기부자와 모금기관 공동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CRM(Cause Related Marketing) 방식의 적극적 도입과 실행이 필요함. 이 방법의 전략적인 활용은 공동모금회 모금의 총량을 늘리는데 크게 기여할 것임. 한편 기업 접촉 시 단지 도움을 요청하는 소

극적 태도보다는, 최근 강조되고 있는 ‘기업의 시민의식’(Corporation Citizenship)에 대한 동향을 적극 개진함으로써 기부예의 참여의욕을 자극해야 할 것임.

- 둘째, 대표적 모금 브랜드 개발임. 조직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사업과 적극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공동모금회를 대표할 수 있는 적절한 모금브랜드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 현행 모금방법들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함께 백화점식 접근을 지양하고, 인적·물적 투입을 집중할 필요가 있는 모금상품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음. 직장모금캠페인, CRM방식의 기업기획 모금, 사이버자선복권과 같은 상품에 보다 역량을 모아야 할 것으로 보임. 이와 더불어 개인의 소득, 기업의 이익으로부터의 기부 이외에 다양한 자원(기금, 건물, 증권, 채권, 유산 등)이 기부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음.
- 셋째, 관계성 유지·확대 전략이 필요함. 「비영리 기관의 모금」의 저자인 그레이스(Grace)는 “모금은 돈과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관계와 관련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음. 기부자 및 자원봉사자들과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함. 이를 위해 기부자관리 프로그램의 강화와 자원봉사단 조직 등 적극적인 관계망 확충이 요구됨.
- 넷째, 전문 모금인력 개발 및 확보가 필요함⁸⁾. 공동모금회의 모금은 전문직원의 기획과 준비 및 모금위원회 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모여져 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함. 전문인력의 확보 없이는 모금위원회들의 구성과 관리에서의 한계는 물론 모금시장의 개발과 관리, 모금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 등

8) 조안 플래너건(Joan Flanagan), ‘성공적인 모금전략(Successful Fundraising)’

모든 모금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모금의 인프라확보의 과제로 현재의 모금인력을 보다 전문화시키고 그 규모를 배가시키는 노력이 요구됨.

- 단체들에게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체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자체적인 모금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갈수록 중요함. 지금은 모금활동전문가가 필요한 시대가 되고 있음. 성공적인 모금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각 단체마다 모금전담 실무자가 있어야 함. 이제 더 이상 주먹구구식이고 임시변통적인 행사개최와 주변 동료들의 주머니를 터는 모금방법 만으로는 단체의 재정조달이 불가능함.
- 다섯째, 기부시장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분석 작업이 필요함. 대상 시장에 대한 분석과 접근방법 등을 연구하는 작업은 보다 효과적이고 다양한 모금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실행케 하는 핵심적인 요소임. 아직 미개발 상태의 잠재적 모금시장에 대한 분석은 이들에 대한 접근을 가능케 하는 프로그램의 개발로 연결되고, 이러한 작업은 공동모금회 모금성과를 극대화 하는 동력이 됨.
- 여섯째, 기부자의 신뢰성 확보가 필요함. 투명성과 공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모금기관의 무기임. 특히 공동모금회 배분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그리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를 통해 기관의 신뢰성을 보장받는 일은 모금을 배가할 수 있는 중요한 인프라가 됨.

다. 민간복지재원의 사례(2) : 대한적십자사의 적십자회비

1) 목적 및 설립 배경

- 대한적십자사는 대한적십자사조직법(법률 제25호로 1949년 4월 30일 공포)에 의거 설립된 특수법인임. 전시 전상자 치료 및 구호사업, 의료사업 및 이산가족사업, 청소년사업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특수복지사업 및 남북 교류사업지원 등을 수행함.
- 적십자회비모금은 1952년 대통령 지시(담화발표)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모금을 대행함으로써 1953년부터 시작됨. 이후 읍·면·동 직원 및 통·리·반장을 적십자회비모금위원으로 위촉하여 약정모금을 실시해 옴. 그러나 강제징수 및 현금유용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고 투명한 모금을 정착시키기 위해 1995년 회비모금 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하여 2000년부터 전국적으로 지로모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대한적십자사는 회비모금을 위해 기부자와의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회원의 만족도 증대를 위해 홈페이지를 통한 기부금액의 실시간 조회, 기부금액 및 회원의 정보변경이 가능토록 하고 있음. 회원의 회비납부 편리를 위해 편의점 납부, 가상계좌 서비스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로이외에도 신용카드, 전화요금, 휴대폰결제 등의 다양한 납부방법을 제공하고 있음.
- 대한적십자사조직법 및 정관에 의거 회원은 회비를 납부토록 하고 있음. 회원은 적십자사의 임원, 중앙위원 및 전국대의원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월정기기부자를 대상으로 감사서한, 후원회원증, 뱃지, 적십자소식지, 연하장, 수첩 등을 발송하고 있음.

- 병원이 있는 지사의 경우 건강검진 할인 및 초진료 면제, 각종 적십자교육 시 할인 혜택, 연말에 기부금영수증 발송을 통해 회원들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특별회원의 경우 포상운영규정에 따라 누적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회원유공장(은장, 금장, 명예장, 명예대장, 최고명예대장)을 수여하여 자긍심을 높이고 있음.

(2) 적십자회비 모금 현황

- 적십자회비의 모금은 집중모금(1월20일부터 2월28일까지)과 연중모금으로 구분됨. 연도별 모금실적으로 보면 2004년에는 397억9,900만원, 2005년에는 410억400만원, 2006년7월까지 407억8,600만원을 모금함. 목표대비 각각 97.6%, 99.8%, 97.6%의 달성율을 보임.

• • 연도별 모금실적 • •

(단위 : 백만원)

구 분	모금목표액	모금실적	달성율(%)	비 고
2006. 7	41,783	40,786	97.6%	
2005	41,103	41,004	99.8%	
2004	40,777	39,799	97.6%	

※자료 : '연도별 모금실적', 대한적십자사, 2006. 8

가) 적십자회비 목표 대비 모금 실적

- 적십자회비 자율납부제를 시범실시한 1997년 이전에는 회비 집중모금 기간 내에 목표한 금액을 모금할 수 있음. 그러나 자율납부 시행 후에는 '납부하

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의 확산, 행정기관의 협조 감소, 회비모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부족 등의 사유로 회비모금 여건이 악화됨. 거의 1년간 모금활동을 전개해도 목표 달성이 어렵고 오히려 연중모금으로 국민정서가 좋지 않게 되어 해를 거듭할수록 회비모금이 힘들어 지는 추세임.

● ● 적십자회비 목표대비실적표 ● ●

연도	구분	일반회비①			후원회비②		
		목 표(천원)	실 적(천원)	달성률(%)	목 표(천원)	실 적(천원)	달성률(%)
2001		38,019,874	37,134,082	97.7	1,262,830	1,455,143	115.2
2002		39,408,420	39,110,184	99.2	2,251,200	1,828,638	81.2
2003		39,875,159	38,866,292	97.5	2,415,411	2,080,433	86.1
2004		40,777,828	39,799,278	97.6	2,648,895	2,271,428	85.8
2005		41,103,668	41,004,959	99.8	2,719,300	2,565,974	94.4
2006.8.31		41,783,790	40,751,635	97.5	3,322,989	2,075,141	62.4

*주1)일반회비 : 세대주와 법인을 대상으로 당해년도에 모집한 회원이 납부한 회비

주2)후원회비 : 누적 모집한 회원이 당해년도에 납부한 회비

※자료: '적십자회비 목표대비실적표', 대한적십자사, 2006. 10

- 고지대비실적을 보면 적십자회비 건수와 금액 모두 고지대비모금률이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며, 특히 모금액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세대주의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매년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상된 금액으로 더 많은 대상에게 고지하고 있는 실정임.

● ● 적십자회비, 고지대비실적표 ● ●

연도 \ 구분	고지①		모금②		고지대비모금률(%)	
	건 수	금액(천원)	건 수	금액(천원)	건 수	금 액
2 0 0 1	14,383,185	84,599,548	6,529,248	37,134,082	45.4	43.9
2 0 0 2	14,606,585	88,930,371	6,829,795	39,110,184	46.8	44.0
2 0 0 3	14,927,044	94,099,696	6,526,967	38,866,292	43.7	41.3
2 0 0 4	15,620,987	112,881,663	5,843,847	39,799,278	37.4	35.3
2 0 0 5	15,375,231	121,806,915	5,706,099	41,004,959	37.1	33.7
2006.8.31	15,511,944	121,787,483	5,577,555	40,751,635	36.0	33.5

※자료 : ‘적십자회비 고지대비실적표’, 대한적십자사(안명옥의원 재구성), 2006. 10

나) 대상별 고지대비 회비모금 참여율

- 적십자회비의 약 75%에 이르는 세대주 참여율의 지속적인 하락과 25% 정도의 타 대상 참여율의 저조로 회비모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적십자회비 납부 대상의 지속적 발굴과 고지금액의 인상으로 매년 목표금액에 일정 부분 접근하고 있는 상황임. 세대주 참여율 감소에 대한 대안으로 고액회원 특히 법인회원 개발에 노력하고 있으나 우선 세법개정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사회공헌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능력을 가진 법인(기업체)의 고지대비 납부율이 20%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국가·사회적으로 큰 손실이라 판단됨. 사회양극화 해소라는 큰 틀에서도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지원에 힘쓰고 있는 적십자사를 통해 기업의 여유가 부족한 곳으로 이동하는 의미 있는 일로 보여짐. 이를 통해 현 정부의 고민인 양극화 해소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음.

• • 적십자회비, 고지대비참여율 비교 • •

구분	연도	세 대 주		개인사업자		법 인		단 체	
		회원(명)	회비(천원)	회원(명)	회비(천원)	회원(명)	회비(천원)	회원(명)	회비(천원)
2000	고 지	14,544,375	62,794,242	621,314	9,319,710	247,272	10,299,855	59,892	3,013,050
	실 적	6,645,985	30,965,543	149,910	2,615,215	59,932	3,033,565	12,489	702,638
	참여율	45.7%	49.3%	24.1%	28.1%	24.2%	29.5%	20.9%	23.3%
2001	고 지	13,384,047	60,307,430	658,025	9,900,733	278,199	11,199,950	62,914	3,191,435
	실 적	6,253,647	29,553,314	185,788	3,193,205	77,410	3,521,768	12,404	777,250
	참여율	46.7%	49.0%	28.2%	32.3%	27.8%	31.4%	19.7%	24.4%
2002	고 지	13,430,164	60,870,183	755,641	11,447,484	342,076	12,965,195	78,704	3,647,509
	실 적	6,484,646	29,882,782	235,067	3,841,132	91,593	4,314,655	18,489	1,071,615
	참여율	48.3%	49.1%	31.1%	33.6%	26.8%	33.3%	23.5%	29.4%
2003	고 지	13,668,983	62,619,227	811,817	12,744,691	375,550	15,213,525	70,694	3,522,253
	실 적	6,155,946	28,231,368	237,628	4,001,557	95,767	4,314,932	37,626	2,318,435
	참여율	45.0%	45.1%	29.3%	31.4%	25.5%	28.4%	53.2%	65.8%
2004	고 지	14,335,747	77,464,812	825,730	16,506,706	393,757	15,685,344	65,753	3,224,801
	실 적	5,498,873	29,413,450	219,111	4,570,749	86,041	3,998,955	39,822	1,816,124
	참여율	38.4%	38.0%	26.5%	27.7%	21.9%	25.5%	60.6%	56.3%
2005	고 지	13,976,651	78,263,537	896,428	17,649,530	420,244	20,755,340	81,908	5,138,508
	실 적	5,362,335	29,979,777	219,195	4,645,488	86,075	4,182,842	38,494	1,645,923
	참여율	38.4%	38.3%	24.5%	26.3%	20.5%	20.2%	47.0%	32.0%
2006 8.31	고 지	14,108,974	77,363,648	885,161	19,060,550	443,800	21,669,200	74,109	3,694,085
	실 적	5,248,074	29,495,130	206,622	4,681,360	85,279	4,644,542	37,580	1,930,603
	참여율	37.2%	38.1%	23.3%	24.6%	19.2%	21.4%	50.7%	52.3%

※자료 : '적십자회비 고지대비참여율 비교', 대한적십자사, 2006. 10

다) 대상별 회비모금 구성비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전체 기부금 중 기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4년 66.6%, 2005년 72.9%에 이르고 있음. 대한적십자사의 회비모금에 있어 법인(기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4년 10.0%, 2005년 10.3%로 극히 저조한 실정임.

● ● 적십자 회비, 대상별 회비모금 구성표 ● ●

구분 \ 연도	계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회비 (천원)	비율 (%)	회비 (천원)	비율 (%)	회비 (천원)	비율 (%)	회비 (천원)	비율 (%)	회비 (천원)	비율 (%)
2000	37,316,961	100.0	30,965,543	83.0	2,615,215	7.0	3,033,565	8.1	702,638	1.9
2001	37,045,537	100.0	29,553,314	79.8	3,193,205	8.6	3,521,768	9.5	777,250	2.1
2002	39,110,184	100.0	29,882,782	76.4	3,841,132	9.8	4,314,655	11.0	1,071,615	2.8
2003	38,866,292	100.0	28,231,368	72.6	4,001,557	10.3	4,314,932	11.1	2,318,435	6.0
2004	39,799,278	100.0	29,413,450	73.9	4,570,749	11.5	3,998,955	10.0	1,816,124	4.6
2005	40,461,637	100.0	29,979,777	74.1	4,645,488	11.5	4,182,842	10.3	1,645,923	4.1
2006.8	40,751,635	100.0	29,495,130	72.4	4,681,360	11.5	4,644,542	11.4	1,930,603	4.7

※자료 : '적십자회비 대상별 회비모금 구성표', 대한적십자사, 2006. 10

□ 사회공동모금회에 대한 법인의 기부금 현황을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하고 있음. 이에 비해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법인의 기부금은 미미한 수준임. 기부금품 모집 및 모금활동에 있어 동등한 조건 아래 경쟁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을 정비가 필요함.

●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도별 기부현황 ● ●

(단위 : 백만원)

구 분		공공기관/산하 기관	사회/학교/종 교단체	기업체	개인 / 기타	계
2006	모금액	5,861	16,872	115,146	20,031	157,910
	비 율	3.7%	10.7%	72.9%	12.7%	100.0%
2005	모금액	4,708	16,168	78,958	18,722	118,557
	비 율	4.0%	13.6%	66.6%	15.8%	100.0%

※자료 : '희망2006이웃사랑캠페인결산자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요 기업 기부 내역 • •

기 업 명	희망2004	희망2005	희망2006	전년대비 증감
삼 성	100억	200억	200억	-
현 대 기 아 차	70억	70억	100억	30억
L G	50억	70억	100억	30억
S K	50억	70억	100억	30억
국 민 은 행	70억	20억	70억	50억
포 스 코	20억	70억	70억	-
G S	-	-	50억	50억
S B S	-	-	50억	50억
한 진	2억	3억	30억	27억
롯데	15억	20억	30억	10억
두 산	-	7억	30억	23억
K T & G	-	-	30억	30억
금호아시아나	1.6억	5억	10억	5억
효 성	4.2억	2억	2억	-
농 심	1억	2억	2억	-
한 화	3억	10억	10억	-
신한금융지주	7억	20억	20억	-
우 리 은 행	2억	2억	3억	1억
삼 양	1억	2.6억	2.5억	▽1천만원
동 양	1억	1.5억	2억	5천만
풍 산	1억	1.2억	1억	▽2천만원
한 술	-	-	1억	1억
계	398.8억	576.3억	913.5억	337억2천만 증가

*주1) 기간표시 : 희망2004캠페인(2003. 12~2004. 1), 희망2005캠페인(2004. 1
2~2005. 1), 희망2006캠페인(2005. 12~2006. 1)

※자료 : '희망2006이웃사랑캠페인결산자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라) 대한적십자사 연간 회비 및 기부금 모금 규모

□ 대한적십자사의 연간 회비 및 기부금 모금 규모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보다 적으나 우리나라의 단일 비영리법인 중 규모가 가장 큰 기관의 하나임. 특히, 국제적십자위원회(스위스, 제네바), 국제적십자사연맹(스위스, 제네바)과 각국적십자사(전세계 183개국)와 연결된 국제적 네트워크를 통해 국제구호활동 및 대북구호활동의 거의 유일한 단일 창구로서의 역할을 전개하고 있음.

• • 대한적십자사 연간 회비 및 기부금 모금 규모 • •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회비	국내구호·일반 성금	국제구호성금	대북구호성금
2001	45,875	38,589	1,740	240	5,306
2002	44,027	40,939	2,697	125	266
2003	46,381	40,947	2,381	718	2,335
2004	62,996	42,070	1,735	1,263	17,928
2005	84,730	43,571	3,222	37,789	148

※자료 : ‘연간회비 및 기부금 모금 규모’, 대한적십자사, 2006. 8

마) 모바일 기부자 모집

□ 대한적십자사는 2004년도에 모바일을 통한 기부자 모집제도를 도입함. 그러나 회원정보를 확보할 수 없는 일방적 기부방법으로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회원관리가 어려움. 모금효과대비 지출비용을 판단한 결과, 2006년도 부터는 예산사용을 중단기로 함.

• • 연도별 목표대비 실적(달성률) • •

(단위: 금액/천원)

구분		2006.6월말	2005년도	2004년도
목표	회원수	25,000명	25,000명	25,000명
	기부금액	48,750	48,750	48,750
실적	회원수	6,785명	6,666명	4,333명
	기부금액	19,587	33,535	7,722
달성률	회원수	27.1명	26.7명	17.3명
	기부금액	40.2%	68.8%	15.8%

*회원수는 누적인원, 기부금액은 당해연도 모금액임

※자료 : '연도별 목표대비 실적', 대한적십자사, 2006. 8

• • 연도별 모바일 모금 관련예산 및 집행실적(집행률) • •

구분	예산(천원)	집행실적(천원)	집행내용	집행률(%)
2006년	-		번호이용료 전액 면제	
2005년	78,100	60,500	번호이용료	77.5
2004년	348,000	270,450	초기개발비 번호이용료 용역비	77.7

※자료 : '모바일 관련 예산 집행실적', 대한적십자사, 2006. 8

바) 적십자, 재해성금 모금 현황

- 대한적십자사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재난관리책임기관임. 재해 및 재난 발생 시 기부금품모집및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성금 모집 및 집행하고 있음. 대한적십자사의 재해성금 모금 규모를 보면 2003년은 54억 3,400만원, 2004년은 209억2,600만원, 2005년은 411억5,900만원에 이르는 등 급증하고 있음.

• • 대한적십자사 연간 재해성금 모금 규모 • •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국내구호·일반성금	국제구호성금	대북구호성금
2001	7,286	1,740	240	5,306
2002	3,088	2,697	125	266
2003	5,434	2,381	718	2,335
2004	20,926	1,735	1,263	17,928
2005	41,159	3,222	37,789	148

※자료 : '대한적십자사 연간 재해성금 모금 규모', 대한적십자사, 2006. 8

□ 대한적십자사는 우리나라의 단일 비영리법인 중 규모가 가장 큰 기관의 하나임. 특히 국제적십자위원회(스위스, 제네바), 국제적십자사연맹(스위스, 제네바)과 각국적십자사(전세계 183개국)와 연결된 국제적 네트워크를 통해 국제구호활동 및 대북구호활동의 거의 유일한 단일 창구로서의 역할을 전개하고 있음.

3) 적십자회비 모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적십자회비 모금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2000년 전국 지로모금제도 실시 이후 적십자회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참여회원의 감소로 나타나고 있음. 둘째, 행정기관의 모금협조 과정(배부, 독려 등)에서 국민들의 민원발생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상존하고 있음. 셋째, 회비모금액 부족에 따른 대체 재원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연구와 분석이 필요함. 넷째, 행정기관의 모금지원 업무 축소로 인한 우편발송 등 모금 소요비용의 증가에 따른 대책 필요함. 다섯째, 재정수요 증가대비 회비모금액 증가 둔화로 경상비의 증가가 지속되고 있음.

□ 개선방안으로 첫째, 국민이 감동할 수 있는 사업전개 및 홍보강화를 통한 자율적 참여의 확대가 절실히 요구됨. 둘째, 회비납부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납부방법의 다양화를 추진하여야 함. 셋째, 세대주 중심의 모금활동 이외에 일시기부 및 인터넷 기부 등 불특정 다수의 기부참여를 유도해야 함. 넷째, 국민의 자발적, 지속적 참여를 위한 월(月)정기기부 후원회원 모집을 확대하는 한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사회협력을 통한 기업참여 및 파트너십 확대를 유도가 필요함. 여섯째, 법인의 참여가 낮은 상황에서 법인세법상 법정기부금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기부금으로 개정을 추진하여 법인의 참여를 유도해야 함. 일곱째, 국민의 자발적인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Noblesse Oblige」 건전 기부문화 운동을 추진해야 함. 여덟째, 정기 후원회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운영하여 관리시스템을 일원화하고 관리 인력의 전문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가) 적십자 회원 확보의 문제 : 적십자 회원 허와 실

□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해 적십자 조직은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며, 전 국민이 회원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회원의 회비납부는 법률적으로 의무사항이나, 그동안 적십자회비는 자선적인 성격의 성금으로 모금되어 왔음. 통상적인 개념의 회원의 회비납부와는 성격을 달리함. 과거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모금된 적십자회비는 준조세 시비가 지속되어 왔으나, 2000년 이후 지로납부용지 배부 후 자발적인 참여로 형태를 변경하여 행정기관은 지로납부용지의 배부 및 홍보에만 협조하고 있고, 주민들의 참여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음.

-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적십자회비모금은 2000년대 초까지 국내의 최대모금으로 기부문화 조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해왔음. 적십자사의 보편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 매년 적십자회비모금에 참여하는 600여만명의 일반 국민(세대주, 개인사업자 및 법인)을 대상으로 정기기부 및 일시기부 등 모금방법의 다양화를 통해 지속적인 후원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나) 지자체와 적십자의 갈등 및 문제해결 방안

- 일선 행정기관의 동 기능 개선과 관련하여 적십자회비모금이 읍면동 사무가 아닌 시군구 사무로 조정되어 실무 지원에 어려움이 있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모금 업무에 연이어 적십자회비모금을 실시함으로써 모금위원 및 주민들의 중복모금에 따른 피로감이 나타나고 있음. 또 주민들의 적십자회비 납부용지 수령 거부 등 모금위원(통·리장) 및 일선 행정기관의 지로납부용지 전달에 따른 주민 직접 접촉으로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음.
- 개선방안으로 모금시기의 조정 검토, 법인기부 활성화를 통한 거액모금 추진과 온라인 기부 활성화 방안 추진 등이 있음. 아울러 정기기부자(후원회원) 확대를 위한 중장기 계획 추진이 필요함.

다) 경쟁 NGO 확산에 따른 문제 및 해결방안

- 적십자조직에 대한 관변단체 인식 및 대북 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로 모금참여에 부정적인 태도가 나타나고 있음. 다양한 NGO 출현 및 모금 확대로 구호 및 사회봉사활동에 따른 적십자사의 독보적인 지위가 축소되고 있음.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적십자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

이 요구되고 있음. 다양한 기부 및 모금 프로그램을 통해 전 국민의 기부 문화 확산하여 모금시장 전체를 확대가 필요함.

라) 기부금 모금 시장의 형평성 개선 방안

- 세대주에게 부과하여 십시일반 4,000원 내지 6,000원씩 모금해 오던 적십자회비 모금 여건의 악화로 기업체 등의 법인 모금 시장에 눈을 돌리고 있음. 그러나 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의 범위(적십자회비,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5%)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기부금, 50%)에 비해 적어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 조성에 어려움이 있음. 대한적십자사가 그 역할을 보다 충실하고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원조성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법인이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하는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확대함으로써 법인의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기부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본질적으로 우리나라 기부금 모금 시장의 형평성을 갖추도록 해야 함.

마) 정부 참여 및 지원의 문제 : 우편비 감면, 고지서 비용 문제 등

- 대한민국 국회 및 정부가 제네바협약의 비준을 통해 국제법적으로 수용한 자국내 적십자사의 발전 및 장려에 의한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적십자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회원의 회비, 보조금,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토록 되어 있음.
- 그동안 회원의 회비형태로 정부(행정자치부)가 모금에 적극 협조하여 왔으나, 국민들에게는 잡부금 또는 준조세 시비가 지속되어 왔음.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정관 및 사무처리지침이 행정기관의 적십자 회비 모금 협조의 근거가 되고 있으나, 업무지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법률적 근거를 요구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음.

- 주민등록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종전 1건당 10원의 수수료가 30원으로 인상되어 자료이용 수수료만 5억여원 이상을 지출해야 하는 등 모금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또 전산자료 이용 및 수수료 면제에 대한 조직법 개정이 필요함. 목표미달에 따른 추가모금 횟수 증가로 매년 지로납부용지(고지서) 추가 인쇄 및 우편 발송량이 증가하여 모금비용이 증가하고 있음. 우편료 감면 혜택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한 25% 감면에 그치고 있음.

- 법률에 의해 정부 인도주의 사업의 보조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적십자활동의 사업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률적 장치가 요구됨. 제네바협약 체결당사국으로서 국제적십자 운동내에서의 국가적인 위상을 고려해 안정적인 재원마련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기금조성 이외에 세제상의 혜택을 통한 재원확충 방안이 동시에 모색되어야 할 것임.

바) 회원모집 확대 및 회원 인센티브 제공

- 지로납부용지를 통한 연례 비정기기부 이외에 매월 또는 일시적인 기부를 확대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한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을 필요함. 월정기기부 후원회원 100만명 모집 10개년계획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사회협력위원회를 설치하여 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사회공헌사업 협력을 추진하고, 특별기부 약정 및 사업 연계를 통한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함.

- 적십자 조직은 적십자봉사원 및 청소년적십자 단원 등 무보수 자원봉사자를 통해 운영되는 조직으로서 자선적인 성금의 성격을 갖는 적십자회비모금의 취지로 볼 때, 회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인도주의 적십자활동의 서비스 향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임.

3.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현황 및 발전방향

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필요성

1) 사회공헌 활동의 대두⁹⁾

-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기업의 역할이 변화해 옴. 지난 1970년대의 경우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이 국민경제에 크게 기여했다면, 1990년대 들어 기업에게 질 좋은 제품과 일자리 제공이라는 본연의 임무 이외에도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음.
- 이러한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이 이슈화되면서 각 기업들은 사회공헌활동과 사회봉사활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함. 최근 경제계의 화두인 세계화와 IT 혁명은 기업들의 보다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사회공헌을 요구하고 있음.

9) 삼성경제연구소의 「원원전략으로서의 사회공헌활동의 현황과 시사점, 2004」를 인용하여 재정리한 것임.

2) 전략적 사회공헌활동 필요성

- 기업의 사회공헌은 자선중심에서 전략적 사회공헌활동으로 변화해 왔음. 현재의 사회여건은 기업이 소비자, 임직원 및 주주에 대한 책임을 다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까지도 요구하고 있음.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기업의 사회공헌도 자선적, 시혜적 차원의 기부활동에서 전략적인 사회공헌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기업의 역할과 존재의 이유는 생산을 통한 이윤창출과 사회적 역할에 있음. 기업은 사회공헌을 통하여 기업과 사회와의 바람직한 상호관계를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기업시민정신은 기업이 경제의 한 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함으로 표출됨.
- 윈-윈 전략으로서 전략적 사회공헌활동이 부상하면서 기업과 사회의 상생이라는 인식하에 기업과 사회 모두가 이익을 도모하는 전략적 사회공헌활동이 크게 강조되고 있음. 특히 NPO를 파트너로 하는 ‘공익연계 마케팅활동¹⁰⁾’을 통해 많은 기업들이 전략적 사회공헌활동에 접근하고 있음.

나. 기업의 사회공헌 실태조사 결과¹¹⁾

1) 기업부문 조사결과

- 기업의 사회적 공헌 활동의 기업 내 도입현황을 보면 우리 기업들은 2002년 이후 2004년과 2005년에 걸쳐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

10) 공익연계마케팅활동은 영리기업과 NPO(비영리단체)가 파트너가 되어 함께 하는 공적인 연합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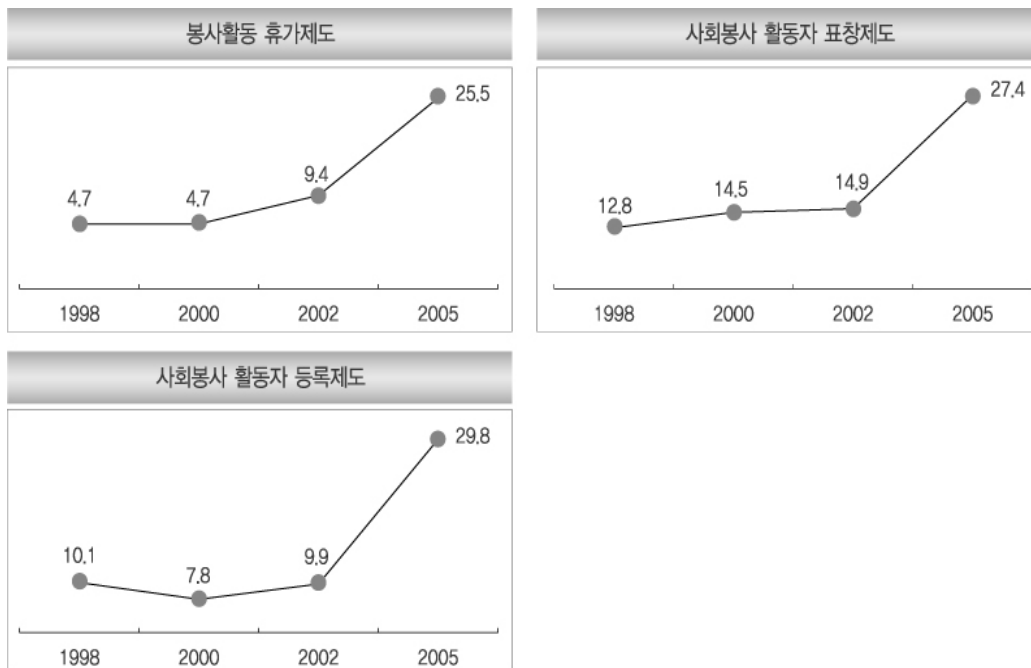
11)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보도자료-2005년도 기업사회공헌 총지출규모 1조 4,000억원 상회, 2006. 8」를 인용하여 재정리한 것임.

하기 위한 제도정비에 주력함. 기본방침의 명문화, 전담부서의 설치 등 사내제도와 관련한 모든 부문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임. 최근 기업들의 사회공헌에 대한 내부 제도의 정비에 대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 사회공헌활동 관련 사내제도의 정비와 별도로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기업의 사회봉사활동 역시 2004년 이후 활발하게 전개되어 이와 관련된 제도의 도입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또한 임직원 1인당 평균 봉사활동 시간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규모 간 큰 편차 없이 골고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사회공헌활동 추진 사내제도 도입비율 추이 •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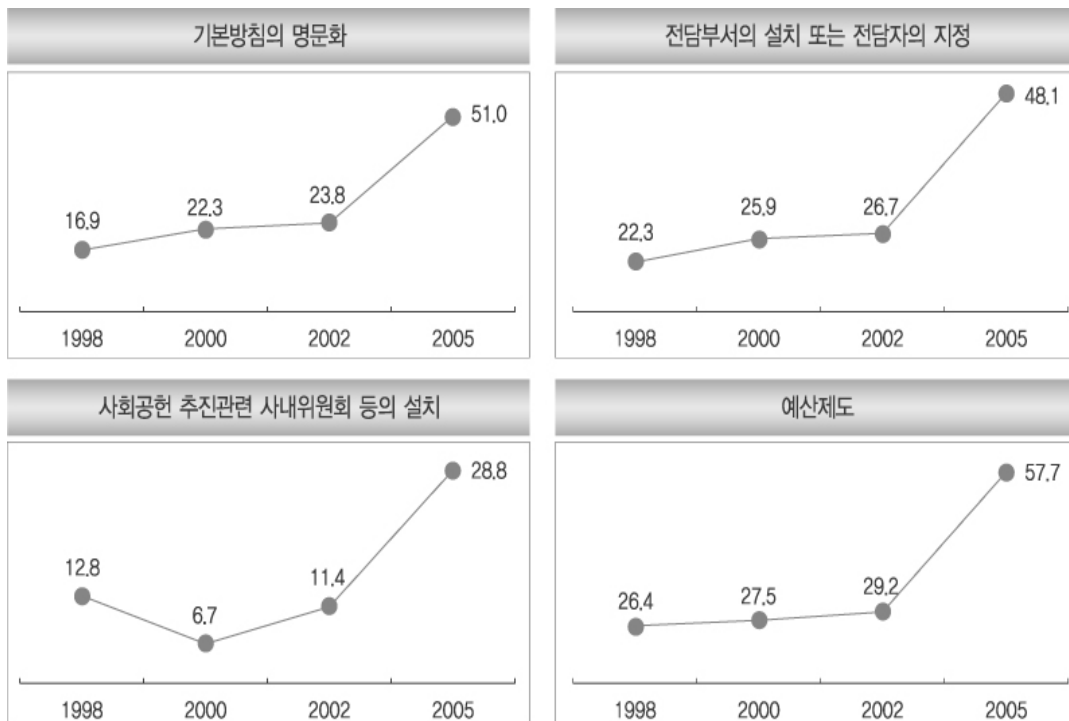
※자료 : 전국경제인연합회, 2006. 8

- 2005년도 기업의 사회공헌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기업들이 2004년과 2005년에 걸쳐 사내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이와 함께 임직원들의 사회봉

사활동이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최근 우리 기업들의 변화하는 사회공헌의 특징을 설명해 주고 있음. 즉, 내부 제도정비와 임직원들의 봉사활동 확대는 최근 우리 기업들의 사회공헌활동이 초기단계인 현금기부 중심에서 벗어나 참여형·전략형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 사회봉사활동 촉진제도 도입비율 추이 • •

(단위 : %)



※자료 : 전국경제인연합회, 2006. 8

2) 사회공헌비용 총지출규모

□ 기업의 사회공헌 실태조사에 응답한 기업들은 2004년 한 해 동안 사회공헌 활동에 총 1조2,284억3,200만원(227개사 응답)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남. 2002년 대비 13.06%의 증가율을 보임. 2005년에는 1조4,025억1,000만 원(244개사 응답)을 지출하여 2004년 대비 14.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 사회공헌비용 총지출규모 추이 • •

(단위 :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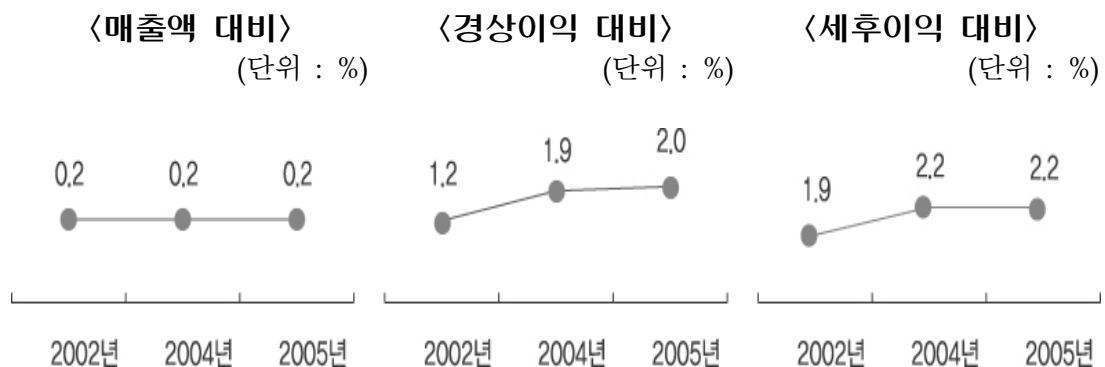
	1996년	1998년	2000년	2002년	2004년	2005년
총 지출비용	306,764	332,710	706,060	1,086,594	1,228,432	1,402,510
전년대비 증감률	-	△32.1	61.7	47.0	13.06	14.17

※자료 : 전국경제인연합회, 2006. 8

□ 1사당 평균 사회공헌비용 역시 2004년 54억1,200만원과 2005년 57억4,800만원을 기록하여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사용한 비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사회공헌비용 수치는 최근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현금기부와 함께 임직원 봉사활동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보여지는 외형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방향에서 활발했던 것으로 추정됨.

□ 특히, 사회공헌 총지출비용이 전체 매출액, 경상이익, 세후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04년에는 경상이익이, 2005년에는 세후이익이 전년대비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공헌 지출규모는 일정수준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 기업 경상이익 대비 세후이익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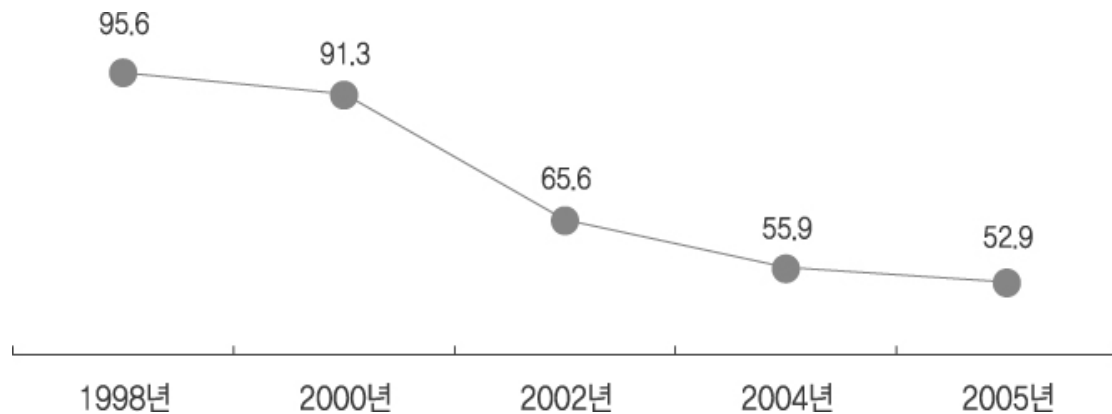


※자료 : 전국경제인연합회, 2006. 8

- 최근 들어 기업들의 사회공헌을 주체적으로 직접 수행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비중이 커지고 있음. 즉, 직접운영 프로그램이 많아지면서 사회공헌 지출비용에 대한 세금혜택의 비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음.

● ● 사회공헌 지출비용 대비 세금혜택 비율 추이 ● ●

(단위 : %)



※자료 : 전국경제인연합회, 2006. 8

- 사회공헌비용의 지출현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2002년부터 꾸준히 교육, 학술, 사회복지, 문화예술 순으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2004년부터 사회복지에 대한 지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최근 더욱 높아지고 있는 데에 기인함.
- 또한 2005년에는 국제구호 활동에 대한 기업들의 참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이는 동남아시아의 쓰나미 피해와 미국 카트리나 피해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임.

• • 분야별 사회공헌비용 지출비율 추이 • •

(단위:%)

분야	1998년	2000년	2002년	2004년	2005년
사회복지	7.3	5.6	15.7	41.0	37.2
의료보건	0.6	1.1	0.1	2.2	2.1
교육·학교, 학술연구	51.8	75.8	40.1	42.6	45.1
문화예술 및 체육	1.9	6.1	14.5	9.1	7.4
환경보전	0.3	0.1	1.0	0.7	1.6
응급 및 재난구호	2.2	0.1	5.4	1.3	1.5
국제구호활동	0.4	0.4	0.9	0.6	2.3
기타	32.4	11.1	14.6	2.4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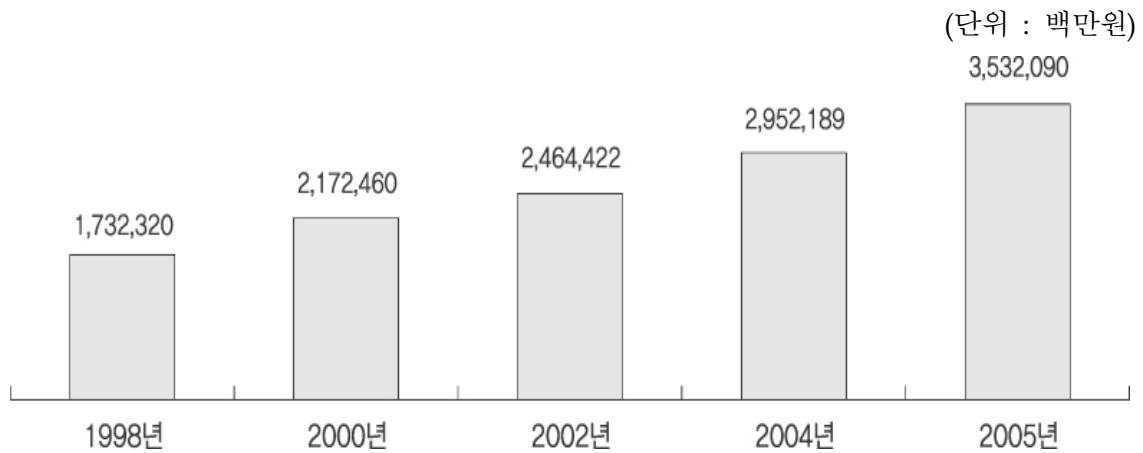
※자료 : 전국경제인연합회, 2006. 8

3) 기업재단부문 조사결과

□ 목적사업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에는 교육사업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기업재단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사회공헌 실태조사에서 기업재단의 주요 목적사업은 교육(72.5%), 문화(36.3%), 사회복지(30.0%)의 순으로 응답함. 기업재단의 주무관청 역시도 교육인적자원부가 가장 많았으며(55.0%), 다음으로는 보건복지부(21.3%), 문화관광부(13.8%)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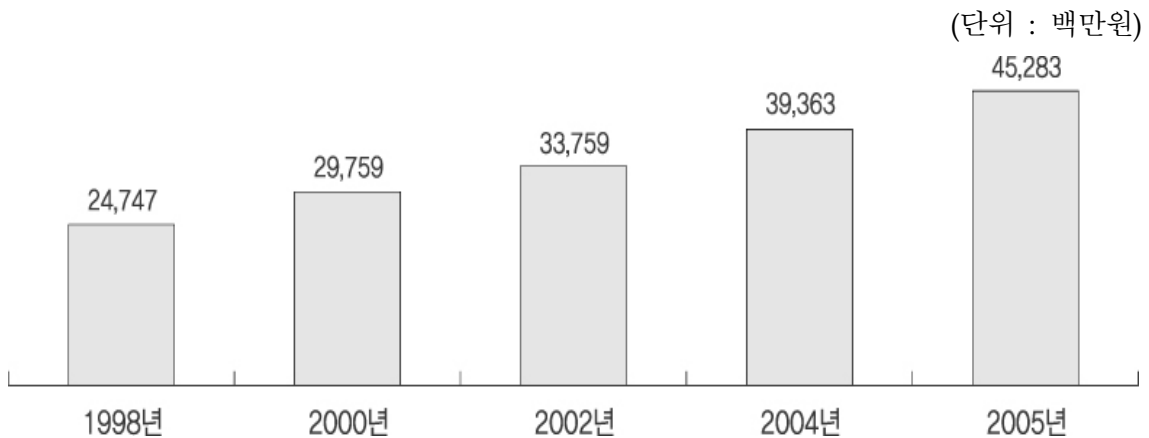
□ 자산규모 추이를 보면 사회공헌 실태조사에 응답한 기업재단의 2005년 총자산액은 3조 5,320억 원으로 2002년에 비해 43.3% 증가함. 이에 대한 1개 재단당 평균자산액은 453억 원으로 조사됨. 1개 재단당 평균자산액 수치는 2002년에 비해 34.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 기업 총자산액 추이 • •



※자료 : 전국경제인연합회, 2006.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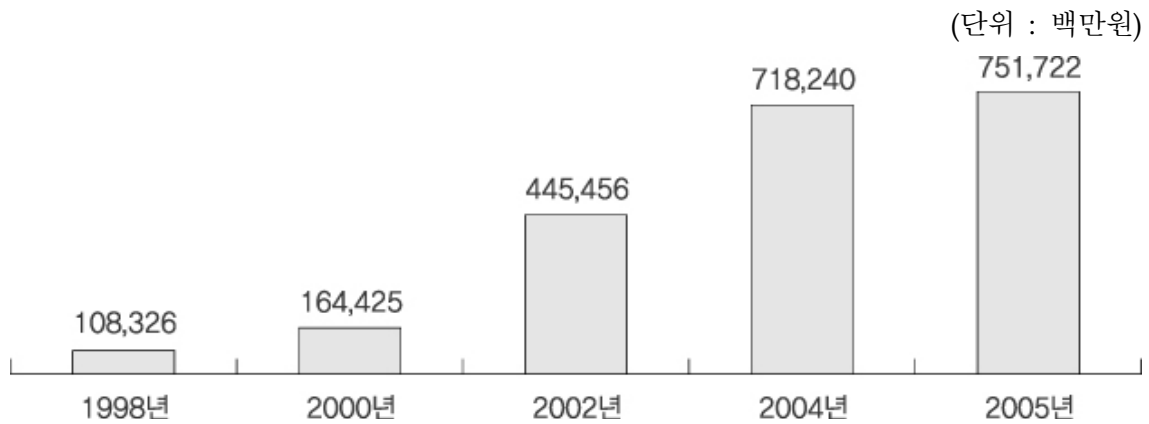
• • 기업 평균자산액 추이 • •



※자료 : 전국경제인연합회, 2006.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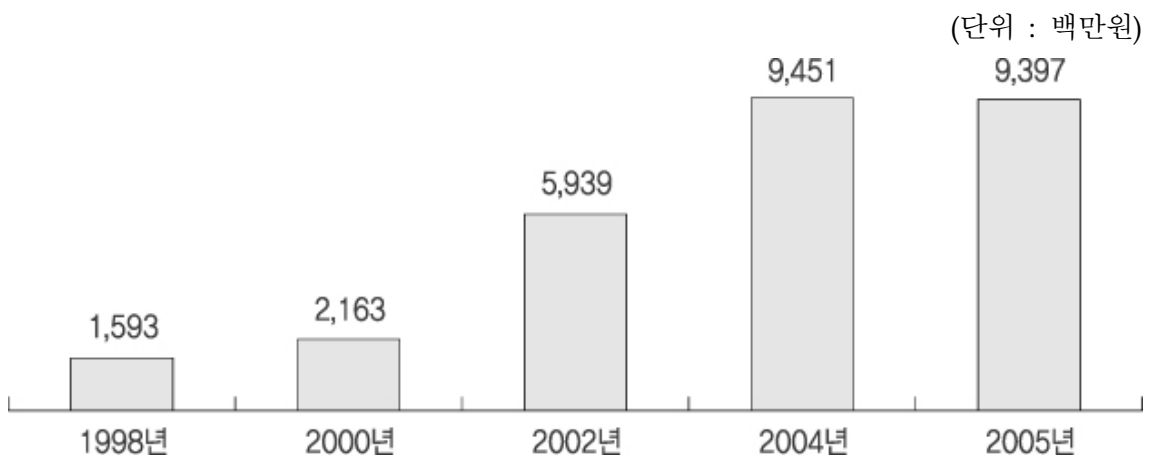
□ 사업비 집행추이를 보면 기업재단의 총사업비 역시 자산현황과 마찬가지로 증가함. 사회공헌 실태조사에 응답해 준 기업재단의 2005년 총사업비는 7,517억2,200만원으로 2002년에 비해 68.8% 증가(2004년 대비 4.7% 증가)함. 1개 재단의 평균사업비 역시 증가하여 1개 재단당 평균사업비가 93억9,700만원으로 집계됨. 이는 2002년에 비해 58.2% 증가한 것임.

• • 총사업비 집행추이 • •



※자료 : 전국경제인연합회, 2006. 8

• • 평균사업비 집행추이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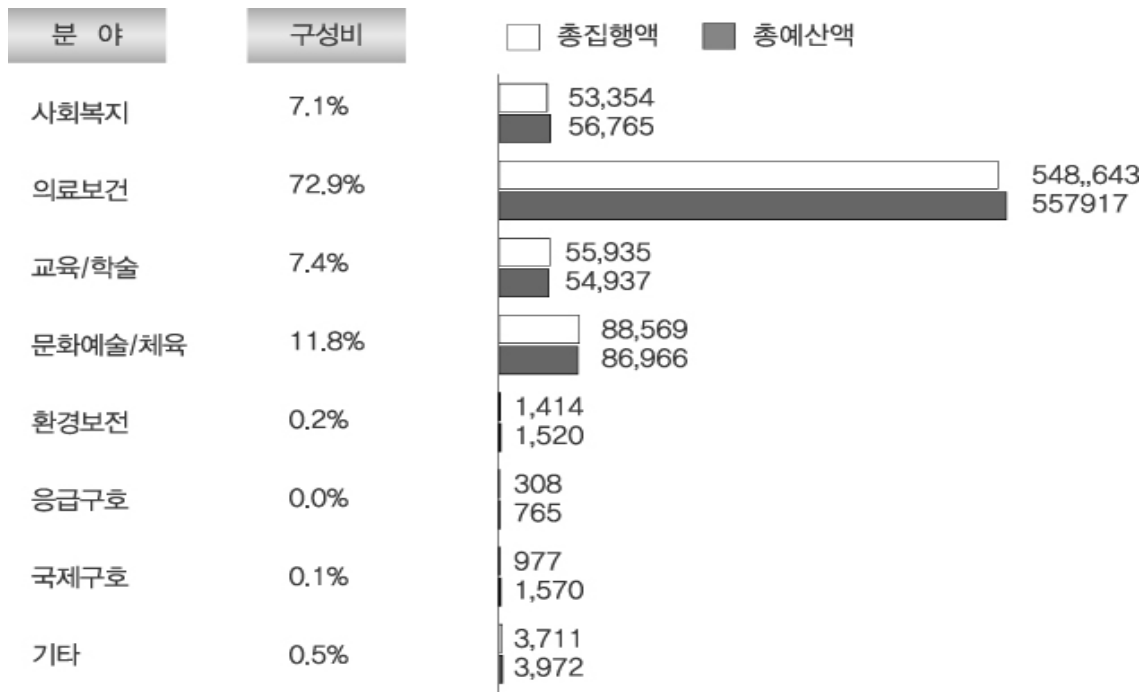


※자료 : 전국경제인연합회, 2006. 8

- 2005년도 사업비 집행현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의료보건 사업비의 비중이 72.9%로 절대적으로 높음. 이어서 문화예술(11.8%), 교육학술(7.4%), 사회복지(7.1%) 사업비의 순으로 나타남. 이는 도서지역까지 보급되어 있는 병의원과 문화예술센터와 같은 대규모 조직의 운영비용이 반영된 것임.

• • 2005년 분야별 사업예산과 집행액 • •

(단위 : 백만원)



※자료 : 전국경제인연합회, 2006. 8

□ 국내 기업은 전경련 1%클럽, 사회공헌 전담부서 설치, 자원봉사 활동을 일상적인 업무로 장려하는 등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하고 있음. 개별 기업 별로 유한킴벌리의 '우리강산 푸르게', CJ의 '푸드뱅크', 한국야쿠르트의 '독거노인에게 야쿠르트 보내기' 등이 있음.

□ 국내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은 직접 지원형식의 기부활동이 주류를 이룸. 이러한 국내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2000년 192개 기업 평균 매출액의 0.37%를 사회공헌활동으로 지출, 일본 기업들의 0.1%보다 세배이상 높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업 기부는 1998년 120억에서 2003년 640억원으로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4)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의 특징 및 시사점

- 우리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평가하면 제도와 시스템의 정비를 통한 내실화 단계임. 우리 기업들은 2002년을 기점으로 사회공헌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정비와 시스템 구축에 주력함. 2004년 및 2005년의 경우 기본 방침 명문화, 전담부서 설치, 사회봉사 휴가제도 등 사내제도 도입비율이 두 자리 수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특히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사회봉사활동이 비약적으로 증가함. 최근의 추이는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현금 기부 중심에서 현장참여형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반영함.
- 사회공헌 비용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기업 사회공헌의 총지출규모는 2002년 1조원을 상회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4년에는 2002년 대비 13.06%, 2005년에는 2004년 대비 14.17%의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 기업의 사회공헌 비용과 별도로 특히 2005년 기업재단의 자산규모 및 총사업비는 각각 2002년에 비해 43.3%와 68.8%씩 증가하여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있어 기업재단의 활동 역시 독자적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기업과 기업 재단간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지고 있음. 기업과 기업재단의 사회공헌 비용의 지출내역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업과 기업재단 간의 분야별 역할분담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기업의 경우 교육학술과 사회복지에 대한 지출비중이 가장 높음. 이에 비해 기업재단의 경우 의료보건과 문화예술에 대한 지출비중이 가장 높음.

5)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의 나아갈 방향

-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도 먼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 기업의 특성에 맞고, 잘 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선택하여 집중하는 것이 중요함. 기업이 이미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적절한 사회공헌활동을 매치하고 기업과 지역사회의 연계를 밀착시킬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활동 개발해야 함. 삼성전자의 정보화 사회지원, 삼성화재의 맹인안 내건 양성과 무료기증사업이 그 좋은 사례임.
- 둘째, 근로자의 사회공헌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함. 현재 매칭기프트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의 15.8%에 불과함. 불런티어 휴직제도, 불런티어 휴가제도, 불런티어 활동자 등록제도 등의 도입은 매우 저조한 실정임. 따라서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근로자의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하는 것도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활성화의 한 방법임.
- 셋째, 기업보다는 개인중심의 사회공헌 추진이 필요함. 대부분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개인기부가 민간기부의 근간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미국의 경우 전체 민간자선기금 1,750억 달러 중 3/4에 해당하는 1,350억 달러가 개인기부임. 나머지가 기업기부임. 우리의 경우 전체 기부 중 개인비중이 매우 미약한 실정(20%미만)으로 개인중심의 사회공헌활동 추진이 시급한 과제임.
- 넷째, 기업내 사회공헌활동 추진 전담부서가 필요함. 사회공헌활동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인프라와 전담부서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함. 현재 10%수준의 기업만이 전담부서를 가지고 있음.

- 다섯째, 기업과 NGO의 파트너십 연계강화가 필요함. 기업시민으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NPO/NGO와의 파트너십 형태로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하는 것도 중요함.

- 여섯째,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법, 제도의 마련이 시급함. 민간기업들의 사회공헌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세법개정을 통해 공익활동에 대한 기부금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국내 공익단체에 대한 기부금에 세제혜택을 주는 금액은 개인의 경우 소득의 10%이고 법인은 5%에 불과함. 미국은 개인기부금에 대해서는 50%, 기업에게는 10%까지 세제혜택을 주고 있음. 일본은 개인과 법인 모두에게 25%의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함께하는 복지실현을 위한 방안



정부주도 복지정책 수행의 한계와 민간복지 현황



1. 정부주도 복지정책 수행의 한계와 문제점

-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는 시대적인 필요성에 의해 단편적으로 도입되어 제도간의 연계가 부족하고 체계적이지 못함. 뿐만 아니라 각 사회복지전달 체계가 분립적, 개별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전국을 통일적으로 포괄, 관장하는 복지지향적 체계가 제대로 확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는 결과적으로 인력과 재원의 낭비 초래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화와 효율화 미흡으로 연결되고 있음.
-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방향을 살펴보면 과거에서부터 복지의 대상은 빈곤층과 일부 특정 소외계층 그리고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로 치부되어 왔음. 그런 이유로 자선이나 시혜적 차원에서 임의적, 일시적 혹은 자발적인 차원에서 간주되어 온 것이 사실임. 또, 현행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은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지시나 위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주도로 이루어져 왔던 복지정책 수행에 대한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 이유로 먼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효율성 제고 문제임.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달체계는 정책결정 부처와 집행부처로 분리되어 있음. 집행부처 역시 다단계의 수직적인 전달체계로 구성되어 있어 일선기관의 사회복지업무 수행은 상부기관에서 정해진 정책의 수동적인 집행에 불과함. 사회복지업무 수행에 있어서도 전문성의 부족으로 효과적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서비스 제공 대상자의 누락 및 그 반대의 자가 서비스를 제공 받는 등의 잘못된 행정 집행으로 부족한 사회복지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내실화에 따른 지엽적 욕구 충족 필요성이 제기됨. 정부주도의 사회복지 서비스는 관료화된 조직과 규칙에 의해 수혜자 개개인이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지엽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복지서비스의 향상에 걸림돌이 됨.
- 셋째, 서비스의 독점적 제공에 따른 폐해 문제임. 중앙정부의 서비스는 공급자가 독점적이기 때문에 공급자가 다수인 경쟁적인 체계에 비해 서비스의 가격과 질이 서비스대상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동시에 새로운 욕구나 변화 욕구에 대한 서비스의 형태나 양의 변화가 매우 늦게 대응하게 됨. 특히, 행정편의 위주로 수직적인 조직체계를 가지고 있기에 수혜대상자의 욕구충족에 따른 일체의 결정이 상부조직에 일임되어 있음.
- 넷째, 복지문제에 대한 인식의 전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됨. 일부계층의 문제로 치부되던 복지의 문제가 21세기에 들어와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욕구분출을 충족시켜야 하는 복지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됨.

2. 민간부문 복지 현황

가. 민간부문 복지의 정의 및 구분

- 일반적으로 민간부문, 즉 민간사회복지 조직이라 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주민조직과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 종교법인, 법정단체 및 기타 특수법인, 등록단체나 법인 또는 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의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관과 시설을 총칭한다”고 할 수 있음.
- 민간기관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 재원의 출처에 따라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첫째는 민간기관에서 사회복지를 제공해도 그것을 위한 재원은 완전히 공공에서 충당하는 형태, 둘째는 순수한 의미의 민간부문의 개념으로 급여 및 재원이 완전히 민간부문에서 이루어지는 형태, 셋째는 급여는 민간기관에서 하지만 재원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부분적으로 충당하는 형태임.
- 오늘날 순수한 의미의 민간부문, 즉 급여와 재원이 완전히 민간부문에서 이루어지는 형태는 매우 적음. ‘운영인 민간이 담당하고 재원은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서구 복지국가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임. 그러나 이러한 형태는 ‘복지국가의 위기’ 이후 정부 재원의 한계로 인해 점차 세 번째의 유형으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임. 우리나라 역시 최근에 많이 등장한 종합사회복지관과 건강보험제도가 이러한 세 번째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음.

나. 민간부문 복지서비스의 특징

-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활동은 시범적이며 융통성이 있고 전문적임. 사회복지 수혜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새로운 기법을 개발하고 새로운 전달체계를 시도하는 등 시범적인 사업을 시도하기가 용이하다는데 그 특징이 있음. 다시 말해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특징은 시범성·융통성·전문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정부가 보편주의적 사회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한다면 민간부문에서는 선별주의적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제공하게 됨.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정부의 보편적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됨. 다시 말해 정부의 보편주의적 사회복지 서비스로부터 제외되는 특정 계층에 대해 원호를 행함으로써 민간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는 정부의 보완적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임.
- 현대 복지국가는 복지에산의 삭감으로 인한 재 민영화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이 오늘날의 추세임. 따라서 민간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국가의 사회복지사업을 위임받아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
- 민간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그 운영에서 주민 참여를 촉구함으로써 주민들로 하여금 사회복지 의식을 갖게 함. 사회 연대론에 입각한 공동체 의식을 지니게 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음. 오늘날 국가의 사회복지사업에 대하여 보조적이고 보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이른바 공공대행 모델의 역할을 하는 것임.

- 따라서 국민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소위 생존권적 기본권을 실현하는 방법으로서 사회복지가 일차적인 기능을 감당함에 있어 민간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복지 수혜자와 가장 밀착된 관계에 있음.

다. 민간부문 복지 현황과 문제점

1) 사회복지협의회

가) 사회복지협의회 연혁

- 우리나라에서는 해방 전부터 사회복지연합기관으로서 ‘재단법인 조선사회사업연합회’와 사설기관인 ‘사회사업연맹’이 있었음. 그러나 조선사회사업연합회는 해방 직전 해산되었으며, 사회사업연맹은 한국전쟁 직전까지 존속하다가 그 이후 기능을 완전히 상실함.
-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한국전쟁 직후인 1952년2월 당시 구호활동을 전개하고 있던 민간사회사업기관들의 모임인 ‘한국사회사업연합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로이 출범함. 1954년 12월 ‘사단법인 한국사회사업연합회’로 허가받았으며, 1961년 6월 16개의 사회복지단체를 병합하여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사업연합회’로 명칭을 변경하게 됨.¹²⁾
- 1970년5월 현재의 명칭인 ‘사회복지법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되어 오늘의 협의체로 성립됨. 1983년5월 사회복지사업법이 전문 개정되면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복지협의회를 둔다고 규정해 법정단체가 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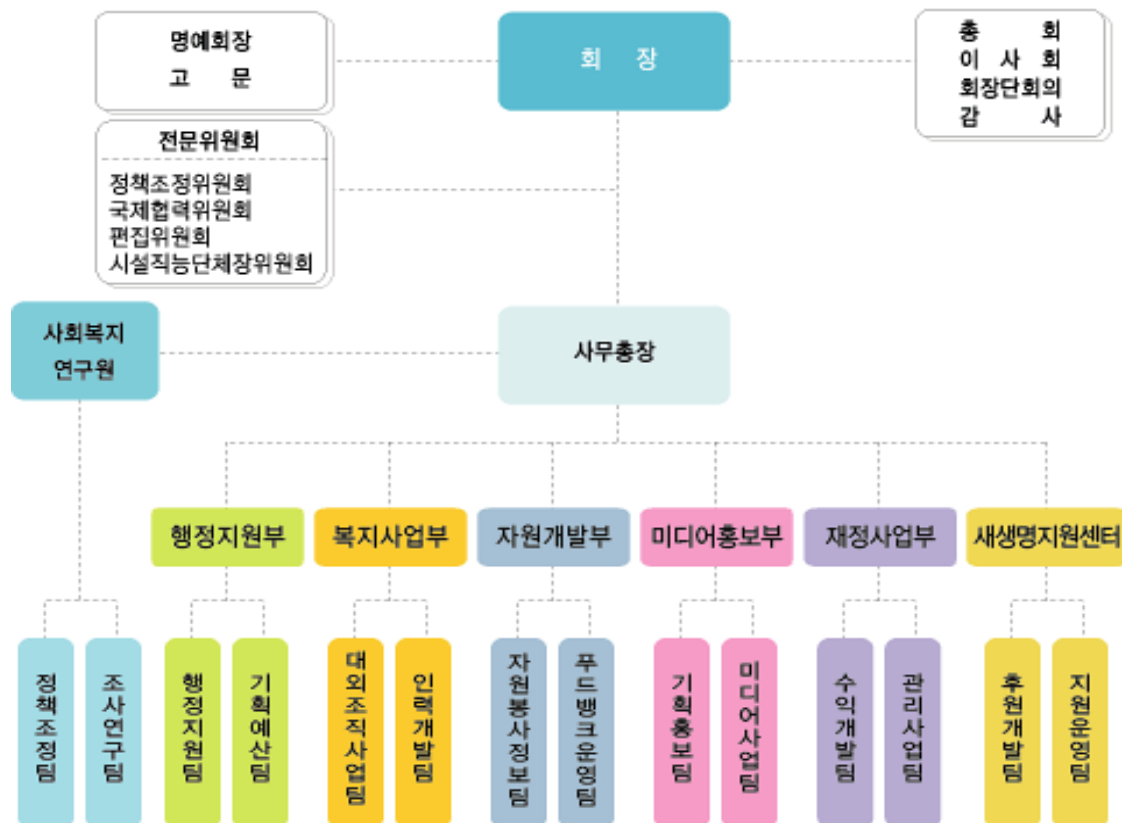
12) 서양희, ‘한국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1

나) 사회복지협회의 조직 및 현황

- 한국사회복지협회의 정관에는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고 각종 사회복지사업과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및 교육훈련 등 19개 항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사회복지협회가 운영하는 사업을 보면 출판사업, 홍보사업, 지방협의회육성, 민간자원의 동원 및 지원, 국제협력사업, 자격증 교부사업 등이 있음.

● ● 현행 한국사회복지협회의 조직도 ● ●

(기준일 : 2006년 6월 현재)



※자료 : 한국사회복지협회의 홈페이지(www.kncsw.or.kr)

- 사회복지협회의 조직은 회원, 임원, 전문위원, 사무처, 지방협의회로 구성되어 있음. 회원은 정회원, 별정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하며, 회원은 가입신청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그 자격을 얻을 수 있음. 현재 회원은 사회복지법인 단체 614개, 사회복지관련인사 283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회원의 대표가 되는 대의원을 통해 의결하고 선거권을 행사하고 있음.

다) 사회복지협회의 문제점

- 현재 사회복지협회는 기업과 연계하여 자원봉사자 전산망을 운영하고 있음. 하지만 실제적인 운영 면에서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음. 사회복지기관, 시설들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종래 사회복지법인에서 법정단체화됨으로써 사회복지분야에서 협회의 위치와 성격에 괄목할 만한 변화를 가져왔음. 그러나 발전적인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에는 다음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¹³⁾
- 첫째, 재정적으로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위탁사업이 대부분임. 민간기관의 성격과 공공기관의 성격이 혼재된 경향을 띠며. 둘째, 지방행정조직의 사회복지담당조직 일반행정 사무조직으로 분류되어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정신적으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셋째, 협회의 운영비는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사업비에 충당되는 비용은 적음.

13) 차은희,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5

2) 사회복지시설

가) 사회복지시설 현황

□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 상담, 부랑인 보호, 직업보도, 무료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및 완치자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복지시설운영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 사회복지시설 현황 • •

(‘05년12월, 단위: 개소, 명)

구 분	시 설 수	생활인원 (정원)	종사자수
계	1,608	115,149	29,937
○ 아 동	430	26,369	5,053
○ 노 인	813	41,094	13,224
○ 장 애 인	265	21,721	9,038
○ 부 랑 인	38	10,846	790
○ 정 신 요 양	57	14,104	1,731
○ 결 핵 요 양 및 한센시설	5	1,015	101

주1) : 「'06 사회복지시설 안내」 법인시설 기준

※자료 : ‘사회복지시설 현황’, 보건복지부, 2006. 8

- 사회복지시설의 구성현황을 보면 전체시설 1,608개소 중 노인복지시설이 813개소(50.6%)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아동복지시설이 430개소(26.7%)이었으며 장애인복지시설이 265개소(16.5%), 등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음.

•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현황 • •

(‘05.12월 기준, 명)

구 분	계	아동 ²⁾	노인 ²⁾	장애인	부랑인	정신 요양 ²⁾	결핵 요양 ²⁾	한 센 장애인 ²⁾
계	24,464	4,743	8,141	9,038	752	1,695	8	87
시 설 장	946	260	341	249	37	55	1	3
사 무 국 장	921	256	332	236	37	55	1	4
상 담 요 원	159	71	-	4	41	43	-	-
생활복지사	1,708	592	311	229	255	315	-	6
직업훈련교사	332	58	-	274	-	-	-	-
보육사·지도원	14,305	2,452	4,704	6,415	159	542	1	32
의 사 ¹⁾	477	4	244	153	16	56	-	4
간 호 사	1,494	151	654	274	63	335	3	14
영 양 사	670	174	203	201	35	55	-	2
기 타	3,452	725	1,352	1,003	109	239	2	22

*주1) 촉탁의사 포함, 주2) 2004년 자료

※자료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현황’, 보건복지부, 2006. 8

나) 사회복지시설의 문제점

- 우리나라 민간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 설립인가를 받은 자라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민간 사회복지시설의 육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법인의 업무 및 재산 운용에 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종사자 총수(단순노무에 종사하는 자 제외)의 1/3이상은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도록 하여 종사자의 전문화를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현실적으로 민간사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에 따라 조직·인사·급여 등 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자체에서 제정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조직구성원의 기초가 되는 직원의 수를 설치기준에 규정하고 있을 뿐임.
-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전국적으로 지역간의 불균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이는 지역 주민들의 의식에 대한 문제와 함께 지방정부의 확고한 정책적 의지가 매우 중요하게 좌우됨. 사회복지 대상자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지식을 갖춘 사회복지사들의 충분한 확보가 시급함. 이를 위해서는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종사자 중 사회복지사 채용수의 상향조정이 필요함.
-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재정 확보임. 재정 확보의 어려움은 시설 종사자의 질을 저하시키고 시설의 열악 등 여러 가지 문제 등을 야기 시키는데 결과적으로는 시설이용자, 수용자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게 됨.

3) 사회복지관

가) 사회복지관의 기능 및 역할

- 사회복지관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되어 전문 사회복지사 및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통한 포괄적인 지역사회 복지서비스를 제공함. 노인,

장애인, 아동,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지역사회복지문제를 예방·해결하기 위하여 1983년부터 설치·운영하기 시작함.¹⁴⁾

- 사회복지관의 기능 및 역할을 살펴보면 먼저,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환경의 특성과 주민들의 당면한 사회복지 욕구를 합리적으로 조사·평가함. 이는 사회복지관의 지역사회복지사업 개발에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동기 조성의 기초임. 둘째,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생활의 현장에서 주민들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사회적인 자립을 직접·간접으로 돕는 종합복지센터의 역할을 수행함. 셋째,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주민 및 유관기관·단체 상호간의 지역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고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함. 넷째, 사회복지에 대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를 적극적으로 개발 및 활용하여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연대의식을 고취함. 다섯째, 저소득층 주민들의 생활향상과 자기실현을 위하여 새로운 생활정보의 보급, 지식·교양의 증대, 자립의욕의 활성화를 위한 동기 조성, 지역사회 소속감의 부여를 위한 사회교육의 모체기능 등을 수행함.

나) 사회복지관 현황 및 주요사업 내용

- 사회복지관 현황을 보면 2005년12월 현재 총 703개소가 있으며, 사회복지관이 391개소(55.6%), 노인복지회관이 182개소(25.9%), 장애인복지관(18.5%)이 130개소임.

14) '2004년도 사회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2005

● ● 사회복지(회)관 현황 ● ●

(‘05. 12월, 단위: 개소)

구 분	개소수	운 영 주 체		
		공 익	비영리법인	기 타
계	703	137	534	32
사 회 복 지 관	391	22	369	-
노 인 복 지 회 관	182	42	114	26
장 애 인 복 지 관	130	73	51	6

※자료 : 보건복지부, 전국 사회복지관 현황, 2006. 8

□ 사회복지관의 주요사업들을 살펴보면 가족복지사업의 경우 가족관계증진사업, 가족기능보완사업, 가정문제해결·치료사업, 부양가족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 ● 사회복지관, 가족복지사업 현황 ● ●

가족복지사업의 주요 기능		프로그램군	단위 프로그램
가족관계 증진기능	• 가족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기대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이상적인 가족관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가족의 능력을 개발·강화하는 사업, 가족문제 예방적 프로그램을 포함함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 가족교육, 부모교육, 가족역할훈련, 대인관계훈련, 의사소통 향상 교육 등
		상담 및 검사	• 부부상담, 부모상담, 가족상담, 심리 검사 등
가족기능 보완기능	• 사회구조 변화로 부족한 가족기능, 특히 부모역할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서비스	아동대상 프로그램	• 방과후 아동보호 및 보육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 공부방 운영, 사회성 향상, 감성교육, 심성발달 프로그램, 진로탐색 및 지도, 학교사회사업
가정문제 해결치료 기능	• 가족단위 또는 문제가 발생한 가족원에 대한 진단, 치료, 사회복지 지원서비스	신체장애관련 프로그램	• 특수아동 조기교육, 특수치료, 중도장애인 집단 프로그램, 장애인 사회 적응 프로그램
		정신장애관련 프로그램	• 정신보건서비스, 알콜 및 약물치료, 정신장애인서비스
		청소년 프로그램	• 청소년 범죄예방사업, 학교부적응학생지도, 징계청소년 프로그램 등
		위기가정 문제	• 이혼, 해체위기가정, 재혼가정 등
부양가족 지원기능	• 요보호 가족원을 돌보는 가족원의 부양부담을 줄여주고 관련정보를 공유하는 등 부양가족 대상 지원서비스	폭력, 학대	• 아동학대 및 방임, 노인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 치매노인 가족지원, 장애인 가정지원, 만성질환자 부양가족모임, 장애아동 부모상담, 기타 부양가족 지원사업

※자료 : ‘주요업무 참고자료(2006)’, 보건복지부(안명옥의원 재구성)

- 지역사회보호사업으로는 급식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경제적 지원,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서비스, 일시보호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음.

● ● 사회복지관, 지역사회보호사업 실적 ● ●

(‘05. 12월, 단위 : 명, %)

서비스내용	연인원 / 평균	%
가사지원사업	1,044,400 / 4,048	7.9
간병지원사업	285,638 / 1,107	2.2
정서지원사업	761,611 / 2,952	5.8
생활지원사업	1,416,984 / 5,493	10.7
의료지원사업	1,004,666 / 3,894	7.6
결식예방사업	7,869,006 / 30,499	59.5
기타사업	831,927 / 3,225	6.3
계	13,214,232 / 51,218	100

※자료 : 주요업무 참고자료(2006), 보건복지부(안명옥의원 재구성)

- 지역사회조직사업으로는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주민조직 강화 및 교육, 복지네트워크구축, 주민복지 증진사업, 자원봉사자 양성 및 후원자 발굴 등을 업무를 하고 있음.

● ● 사회복지관, 지역사회조직사업 현황 ● ●

지역사회조직사업의 주요 기능		프로그램군	단위 프로그램
지역 자원 개발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개발하는 사업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	자원봉사자 개발 및 교육, 청소년 자원봉사지도 등
		물적자원개발 및 관리	후원자 개발 및 관리, 푸드뱅크 개발 및 관리 등
주민 조직화	주민이 지역사회 문제에 스스로 참여하고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주민조직을 육성·지원하는 사업	주민조직체 형성·운영	주민조직주민조직(지역지도자모임, 통반장모임 등) 및 각종 성인동아리(장애인모임 등) 조직운영 등
		주민공동체 형성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녹색가게, 푸드마켓, 주민복지학교, 소비자 이동고발 등
		지역주민 교육 및 주민통합화	-
복지 네트워크	지역내 복지주체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복지서비스 공급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회복지관이 지역복지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사업	네트워크 구축	지역사회복지협의회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동, 운영위원회, 지역실무자모임 등 지역연계사업
		지역복지 중심기관 역할	지역복지 대변자로서의 활동, 지역문제의 발굴 등
주민복지 증진	지역단위 행사 또는 주민편의 시설운영을 통해 주민복지를 증진하고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사업	주민문화행사	경로잔치, 절기행사, 마을잔치, 바자회 등
		시설개방	시설대여, 경로당 운영·지원, 주민사랑방 등
지역조사 및 연구	지역특성과 주민의 복지욕구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실태나 문제를 파악하고 지역주민의 사회서비스에 관한 요구를 수렴하기 위해 행해지는 조사와 이와 관련된 연구사업	지역조사	지역자원조사, 지역문제실태조사, 주민욕구조사, 주민만족도조사 등
		지역복지연구	지역복지관련 연구 활동 및 각종 연구보고서 발간 등
정보화 지원 및 지역사회 홍보	정보화 사회에 따른 각종 전산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지역사회 문제개선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각종 대외 홍보 사업	정보화 지원	지역정보실, 정보화쉼터, 인터넷카페, 주민PC방, 컴퓨터교실 등 운영
		지역사회홍보	홈페이지 운영, 지역신문 발행, 기관소식지 발행, 지역 언론과의 연계사업 등
지역사회 환경개 선을 위한 사회행 동	불리한 처우를 받거나 상대적으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사회계층을 대변하여 취약계층을 옹호하며, 지역사회발전을 저해하는 사회적·물리적 환경개선을 위해 정책과 제도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	취약계층 옹호사업	마을신문고, 주민 민원방, 주민고충상담센터, 주민권익옹호센터, 외국인·탈북자지원사업 등
		지역사회 문제해결 및 물리적 환경개선사업	생활협동조합, 쓰레기재활용사업, 마을환경가꾸기, 지역환경운동, 청소년 유해환경개선운동, 청소년폭력예방운동, 지역사회정책개선 등

※자료 : 주요업무 참고자료(2006), 보건복지부(안명옥의원 재구성)

- 교육문화사업으로는 아동·청소년방과 후 교육, 성인 기능교실, 노인여가·문화, 문화 복지사업을 하고 있음. 자활사업은 직업기능훈련,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자활공동체 육성 등을 하고 있음.

• • 자활사업 참여실적 • •

(‘05년 기준, 단위: 명)

구 분	일반수급자 (자활특례자 포함)	조건부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인	총계
계	5,949	18,897	11,276	1,196	37,318
집수리사업	469	1,042	603	74	2,188
간병사업	746	2,551	1,798	199	5,294
청소사업	524	1,134	799	87	2,544
폐자원재활용사업	385	997	506	28	1,916
음식물재활용사업	96	24	42	5	167
도시락사업	150	402	146	17	715
세차사업	119	74	64	1	258
기타사업	3,460	12,673	7,318	785	24,236

※자료 : 자활사업 참여실적, 보건복지부, 2006. 10

3. 민간복지자원 활용 : 민간시설, 사회단체 동력 활용

가. 사회복지에 있어서 사회단체의 중요성¹⁵⁾

1) 소외계층의 증가 및 복지시설과 시설 종사자의 부족

□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간에 수명연장과 일상생활의 편리함을 가져다주었지만, 그 만큼의 소외계층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 환경오염으로 인한 태생적 장애를 가진 이들이 태어나고, 잠재되어 있는 사회내 많은 위험 속에서 후천적인 장애를 얻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됨. 무엇보다도 의학기술의 발달과 생활의 편리함으로 인해 차츰 사회는 고령화되어가고 있음. 고령층이라는 새로운 소외계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 소외계층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그 사회복지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시설 및 종사자가 부족한 실태임. 맞벌이가 늘어나 탁아시설에 대한 욕구가 있으나 그 시설과 종사자가 턱없이 부족한 형편임. 선천적 후천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요양시설 및 이용시설, 그리고 상담, 치료, 직업훈련의 시설도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임. 특히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그 용도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로 나뉘는 노인 복지시설의 경우 현재도 부족한 게 현실임. 2020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될 현 상황에서 그 부족에 의한 수혜자들의 불편함은 명약관화함.

15) 이환호, '사회단체를 통한 사회복지의 구현방안', 2003

2) 민간복지 사회단체의 역할

- ‘한국민간단체총람’에 등록된 단체수는 1997년에 2,914개, 2000년에 4,023개, 2003년에 7,400개로 급증하였고, 그 수가 증가한 만큼 사회내에서의 역할도 증대됨.
- 이들은 먼저, 정부기능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음. 오늘날 국가의 기능이 어느 때보다도 확대되어 그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러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에 대한 봉사에 한계를 느끼게 됨. 사회단체는 이러한 정부의 한계를 메워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음. 둘째,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임. 사회단체는 한 지역이나 국가에서 일어난 여러 재난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음. 국가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아동, 노인, 장애인 보호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셋째, 정부 및 기업의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사회단체는 정부나 공기업의 예산집행을 감시하고, 국회의 의정활동 및 기업의 부정함을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넷째, 정부 및 기업 정책에 대한 건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사회단체는 정부 및 기업정책에 대하여 항상 건의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고 정부 및 기업에 대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수행하고 있음.

나. 민간복지 사회단체의 한계와 문제점

1) 추진 조직상의 체계적 연결문제

- 사회단체 상호간에 연락체계가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그저 자체 단체의 운영에만 관심을 가짐으로써 활동에 대한 정보교류 및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고 있음. 그 결과 사회단체가 몰리는 분야와 거의 사회단체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기현상이 빚어지고 있음.

- 정부와 사회단체 간에도 상호간의 신뢰성 부족함. 이로 인해 협조를 구하거나 도움을 제공하는 풍토가 거의 조성되어 있지 않음. 사회단체간 혹은 사회단체와 정부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조정을 할 수 있는 기구가 존재할 수 없음. 특히 책임관계가 있는 문제 발생시 공동으로 해결을 모색하기 보다는 서로의 책임을 회피하는데 급급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

2) 가치관의 문제

- 사회복지라는 서비스제공에 대하여 국가만이 제공해야 한다는 가치관이 팽배함. 사회분위기상 사회단체는 정부의 들러리로 전락하게 됨. 활동의 주체로 나서지 못하고, 그 결과 사명감 부족이라는 폐해를 낳게 됨.

3) 봉사 규모상의 문제

- 대부분의 사회단체는 재정규모가 열악하기 때문에 사회단체의 봉사활동은 대부분 소규모임. 재정뿐만 아니라 봉사인원 역시 소규모일 수밖에 없으며 또한 봉사지역 역시 제한되게 됨.

다. 민간복지 사회단체를 통한 복지 구현방안

1) 관민 협조체제 확립을 통한 사회복지의 구현

- 사회단체는 정부기관과의 정보의 상호교류를 통해 서로 도울 수 있는 체계가 개발되어야 함. 예산배정에 있어서도 사회단체와 정부기관과의 상호협

의가 원활해야 함은 물론임. 사회단체의 사업은 광의적으로는 국가에서 하기 힘든 분야의 일을 돕는 것이므로 상호협조하는 자세는 항상 필요함.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정부기관 및 사회단체는 합동세미나 및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함.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2) 교육훈련을 통한 사회복지의 구현

- 사회단체 구성원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성원들의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수혜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음.

3) 기금 확보를 통한 사회복지의 구현

- 사회단체가 사업을 통해서 사회복지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자금이 없으면 불가능함. 기금 확보는 사회복지를 위한 일차적인 수단임. 이러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업 및 개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기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또한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기금을 확보한다면 홍보의 효과와 더불어 안정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4)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지원

- 먼저, 사회복지 법령 및 조례의 정비가 필요함. 사회단체의 사회복지를 위한 활동은 먼저 정부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함. 이를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단체가 공정하고 안정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

를적인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특히 사회복지사업의 경우 그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적절한 규정을 통해 운영을 규제하고 지지하는 것이 노력이 필요함.

- 둘째, 사회복지 기금에 대한 면세혜택 부여임. 사회복지사업에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재정은 기부금과 성금으로 유지되게 됨. 기부금과 성금을 내는 독지가로 하여금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그 동기를 좀 더 명확하게 해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셋째, 사회복지 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함.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욕구는 증대하게 되고 그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은 부족함을 초래할 수밖에 없음. 그러나 사회단체가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러한 시설 확충에 노력하고, 그 운영은 민간 사회단체에게 위임함으로써 운영의 부담을 덜 수 있음.

4.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연계 및 역할 분담 방안

가. 공공과 민간부문간의 연계

1) 공공과 민간부문 연계의 중요성

- 우리나라는 경제적, 정치적으로 안정화됨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 장애의 심화 등으로 보건 및 의료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과

복지가 통합된 서비스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복지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 사회복지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제공되고 전달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의 독립적인 기능보다 상호 연계를 강화하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정립이 필요함. 중앙과 지방의 연계, 기관과 기관의 연계, 시설과 기관, 시설과 시설의 연계가 필요함. 정부의 역할을 보조하고 보완하는 역할을 민간부문이 담당한다고 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사업에 참여하는가의 문제임.

2) 공공과 민간부문의 연계기능 강화를 위한 주안점

- 공공부문의 핵심적인 사회복지전달체계인 복지행정조직과 민간부문의 핵심적인 전달체계로서 사회복지협회의 조직을 확대, 개선하여야 함. 이를 통해 민간부문의 중심센터로서 위치를 새롭게 점검할 수 있도록 민간부문의 핵심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서로 연계, 상호협조 체제를 갖추어 나가야 함. 민간부문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사회복지협회,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의 방향을 제시하고, 민간사회복지전달체계의 역할을 중심으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의 효율화방안 모색이 필요함.
-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활성화되면 각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로서 자주적인 책임으로 사회복지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또 지방의회가 이에 관여할 수 있는 단체위임사무로서 사회복지업무가 이루어져야 함. 그리고 지역복지를 위해 지방의회와 민간부문의 사회복지협회가에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함.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방의회는 안전을 심의 의결하고 사회복지부문의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민간의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연구하고 행동하고 실천하여야 함.

- 사회복지업무가 전문적인 사업수행체계를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행정과 함께 수행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음. 시대와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책은 다음의 분야에서 복지욕구가 심화될 것임. 아동상담시설을 비롯한 아동이용시설의 수요가 증대될 것임. 노령화에 따른 노인전문요양시설을 비롯한 노인복지관, 노인작업장, 기타 노인의 수용, 치료 및 편의시설과 복지프로그램의 수요가 증대될 것임. 또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복지욕구가 증대될 것에 대비하여 저소득층 집단 거주지역에 대한 복지시설의 증설이 필요함. 구빈적 성격의 직접 지원이 아닌 생활편의시설의 확충, 상담, 레크레이션 등의 복지프로그램의 개발, 실시 등의 정신적 문화적 및 시설면의 간접지원이 전개되어야 함.
- 가치관의 변화로 인한 정신질환자의 증대 그리고 산업재해, 공해, 교통사고 등에 의한 장애인 증가에 대비한 재활 및 사회복지시설, 전문적 프로그램의 수요가 증대될 것임. 여성의 사회참여증대로 인한 복지시책이 강구되어야 함과 동시에 이들에게 자원봉사활동의 기회가 주어져야 함. 핵가족화의 확산 추세에 딸 가정문제가 야기될 것에 대비 및 예방을 위한 가정복지,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대책이 요구됨.

나. 공공과 민간부문간의 역할 분담 : 지속 발전가능한 복지정책

1)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간의 역할 분담¹⁶⁾

- 사회보장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분류할 수 있음.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보장급여 등으로 대별할 수 있음. 여기서 사회복지서비스에는 공적기관에 의한 것과 민간기관에 의한 것이 있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음.
- 역할 분담에 있어 국가 전체적인 통일성이 필요한 업무는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기능은 지방에 대폭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함. 중앙부처는 전국적인 사회복지행정의 기준설정, 예산편성에 의한 재원의 확보, 사회복지관련 정부법안의 작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도 감독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정책의 구체적인 시행, 비용의 분담과 집행,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등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본적으로 위임 사무의 비중을 낮추고 자치사무의 비중을 높이되, 소득재분배 기능은 국민생활의 기본을 보장하는 기능으로서 중앙정부가 담당할 필요가 있음. 장기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 기능은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용이한 접근을 통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도록 해야 함. 현지성, 강제성이 요구되는 공공직업훈련,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업무를 우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소득보장업무 가운데 생활보호대상자의 조사, 선정 및 급여의 관리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도록 해야 함.

16) 차은희,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5

- 재정부담에 있어서 중앙정부는 국민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제도적, 재정적, 기획 연구 기능을 전담하되, 지방자치단체는 최저생활보장 부문 이외에 보충적, 부가적 지원기능을 맡아야 함.
- 사회복지분야에서 많은 투자와 발전이 요구되는 견지에서 재가복지 부문에 있어서도 지역에서 사업수행을 하되 중앙정부의 책임과 재정적 역할은 수행되어야 함. 즉, 국민의 기초적 욕구 및 예방적, 보편적 차원에서 전체 국민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욕구충족은 일차적으로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야 함. 그러나 국가는 재정 및 인력부족으로 국민의 기초적 욕구충족에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 사회복지사업의 공공과 민간간의 욕구별 역할 분담방안 • •

욕구	내 용	주체
기초적 욕구	사회적 최저기준의 욕구 최소한의 예방적, 보편적 욕구	공공부문 (비영리사업)
부가적 욕구	사회적 최저기준 이상의 욕구	민간부문 (비영리사업, 개인사업)

※자료 : 안명옥의원 구성, 2006. 9

- 사회복지를 위한 물적 자원 중에서 정부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포함하여)의 모금 및 집행은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거나 거부감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모금 및 배분활동의 자율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함.
- 따라서 공공부문에서는 공공부조 중심의 물질적 욕구 부분을 처리하는 행정체계에 충실해야 함. 민간부문에서는 물질적인 부분을 보완적으로 기능

하고 부가적 욕구영역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역복지관, 사회복지시설, 상담소 등을 통해서 전문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어떤 경우에도 공공부문의 책임이 민간에 무조건 전가되어 공공부문의 부담을 덜게 된다는 것은 곤란함. 그 역할 상 공공부문이 갖고 있는 조직과 기능 그리고 인력과 재정 등의 한계로 인하여 민간부문에 그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의 효율을 높이고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함.

2) 민간부문의 기능강화

가) 다양한 복지서비스의 제공

- 사회복지정책은 처음에는 주로 물질적 급여, 즉 양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경제적 패러다임에 그 중점을 둬. 최근에는 서비스를 강조하고 질적인 측면의 사회문화의 패러다임에 그 관심을 두고 있음.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에 있어 민간부문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강조함으로써 본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임.
- 먼저, 시범적 서비스 실시 문제임. 민간기관의 고유한 역할은 새로운 사회적 필요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범적 서비스를 실험적으로 실시하는 것임. 민간기관은 변화하는 주민들의 새로운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창출하여 전국에 확대 실시할 수 있는 선구적 역할을 담당해야 함.

- 둘째, 전문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발전의 문제임. 민간부문은 수준이 높은 전문적 프로그램을 개발, 발전시켜야 함. 미세한 부문에 이르기까지 전문 인력을 양성, 확보해야 함.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관마다 고유한 전문분야를 확보하고 전문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이 우선되어야 함. 또한 교육기관과의 연대를 통해 전문성 확보에 노력해야 함.
- 셋째, 시민참여 유도의 문제임. 민간부문은 시민참여를 위한 활동에 앞장서야 함. 자기의 기관을 지역사회에 알리고 사회에 필요하고 유익하며 좋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지역 주민에게 인식시켜야 함. 자원을 개발하고 공동모금을 실시하기 위한 필수적인 선행조건임.
- 넷째, 중간집단의 역할 수행임. 민간기관은 중간집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주민들의 욕구를 중앙 및 지방정부에 전달하고 정부의 정책을 주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주민과 정부간의 조정적 역할을 해나가야 함.
- 다섯째,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 향상의 문제임. 사회복지사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질적인 향상은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하는 기본조건임. 사회복지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도 개선될 수 있을 것임.
- 여섯째,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의 문제임. 사회 속의 인간의 문제는 개인과 환경 그리고 인간관계, 지역사회를 둘러싸는 문제로 어느 한 가지만을 문제해결 대상으로 할 수 없음. 사회가 복잡, 다양화되면 국민들의 사회복지 욕구 역시 더욱 다양화되고 세분화됨. 사회복지서비스는 다양한 복지욕구를 감안하여 내실화, 전문화하여야 함.

나) 안정적인 재정확보

-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서 민간부문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이 사실임.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대부분이 비영리 민간법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국가가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조직은 매우 적음. 국가가 민간 사회복지서비스 조직의 인가와 최소한의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서비스전달체계를 통제하고 있음.

- 민간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재원은 주로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으로 구분할 수 있음. 공공재원은 주로 중앙,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며, 민간재원은 후원 결연사업, 법인 수익금, 공동모금, 이용자부담 등으로부터 충당되는 재원을 말함. 영국이나 일본은 주로 공공재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미국은 각 지역 단위로 공동모금회가 활성화되어 있어 공공재원과 민간재원 양측에 의존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은 편임.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외원(해외원조)이나 민간부문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았음. 점차적으로 공공재원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져 가고 있음. 그러나 이 같은 공공재원의 확대에도 단순한 중앙정부 위주의 복지기능 뿐만 아니라 가족 및 지역사회의 복지기능을 제고해야 함. 국가 등의 역할과 재정분담 원칙을 확립하여야 함.



함께하는 복지실현을 위한 방안

IV

결론



- 그동안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중앙정부 중심의 전달체계가 주를 이루어 왔음. 그러나 정책수립에서부터 재정지원, 서비스 제공까지 중앙정부 중심의 복지정책 수행은 아래로부터의 욕구 충족에는 미흡했음.
- 또한 사회가 다양화, 개별화되면서 발생하는 새로운 다양한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구태의연한 과거의 방식을 답습하는 형태의 사회복지정책 수립과 시행으로는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움. 새로운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시혜주의적 사회복지정책은 오히려 국민들로 하여금 중앙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만을 조장할 뿐임.
-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조속히 파악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복지정책의 기틀을 마련해나가야 함. 무엇보다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부문을 어떻게 조화할 것인지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함. 그동안 몸집만 불려온 중앙정부, 중앙정부의 지시와 위임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임해온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중앙중심의 사회복지정책 시행에 따라 역량을 비축하지 못한 민간부문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고찰이 필요함. 이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각 주체간의 역할 분담과 연계체계를 구축해나가야 함.
-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부문 등 각 주체들은 분명한 자신들의 역할이 있음. 거시적인 방향 설정을 하고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하는 중앙정부가 있다면, 지역사회에서 지역적이고 개별적인 욕구를 파악하고, 세부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음. 그러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틈새를 메우고 더 나아가 정부와 동등한 위치에서 사회복지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민간부문의 역할을 명확하게 분담시키고, 상호간의 연계를 모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함.

- 그동안 주목받지 못하고, 정부의 부수적 역할을 해오던 민간부문이 새 시대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주체로 주목받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함.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자율성과 세계화가 주창되는 작금의 시기에 복지분야에서의 민간부문 역할은 날로 커질 수밖에 없음.
- 이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이 따로 가는 체계가 아님. 정부 주도 하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은 이미 그 힘을 잃어가며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새로운 주체의 등장이 요구되고 있으며 그 자리는 민간부문의 역할로 대체되어 갈 것임.
- 새로운 시대, 지속 발전 가능한 사회복지정책은 어느 한 주체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함. 중앙정부의 명확한 역할 정립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그리고 간과되었던 민간부문의 역할 증대로서 한계에 다다른 듯 헤매고 있는 현재의 사회복지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려야 할 것임.
- 21세기 인류의 복지를 위한 가장 큰 걸림돌은 편견과 차별임. 이제 기부는 소외계층에 대한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투자로 인식되어야 함. 기부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위대한 투자임.
- 우리나라도 예로부터 환난상휼의 정신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를 돕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서로 구제하는 다양한 긴급 부조활동과 향약, 두레, 계, 품앗이와 같이 각 마을 단위별로 매우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부조활동들이 있었음. 소위 오늘날 이야기하는 '기부'나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문화에 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었음.

- 최근 들어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늘긴 했지만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의 기부가 여전히 저조함.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가진 자의 오만함이나 사치한 액세서리가 아님.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을 근간으로 한 진솔하고 바른 태도가 그 바탕이 되어야 함. 이렇듯 정부와 민간의 역할이 적절히 조화만 된다면, 더불어 사는 공동체사회를 복원할 수 있음.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사회의 진정한 복원을 위한 정부와 지방정부, 민간부분의 자율적이고 혁신적인 노력을 기대함.

 함께하는 복지실현을 위한 방안

V

부
록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명옥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06. 7. 24.

발 의 자 :

제안이유

대한적십자사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대북지원 및 국제구호 활동 등 인도주의 사업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조직으로서 현재 법인이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한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5% 범위 안에서 손금산입을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한적십자사가 그 역할을 보다 충실하고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원조성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 바, 법인이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하는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확대함으로써 법인의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기부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대한적십자사를 지정기부금단체에서 법정기부금 단체로 조정하여 법인의 대한적십자사 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한도를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5%에서 50%로 확대함(안 제24조제2항제5호 신설).

법률 제 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 지출하는 기부금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제안취지 및 내용

- 대한적십자사의 역할을 보다 충실하고 안정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지정기부금의 하나인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후원금을 법정기부금으로 조정함으로써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법인체들의 후원금의 손금산입한도를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5%에서 50%로 확대하고자 함.
- 이를 위하여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 지출하는 기부금

부 칙

-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한 분부터 적용한다.

II. 대한적십자사 모금현황과 과거 추이

- 2000년 이후의 대한적십자사 회비모금 대상별 참여율을 보여주는 아래의 [표 1]에서 법인의 참여율을 살펴보면, 2003년까지는 25% 내외의 참여율을 보이다가 2004년 이후부터는 20% 내외의 다소 부진한 참여율을 보이고 있음.

• • 대상별 고지대비 회비모금 참여율 비교 • •

(단위: 명, 천원)

		세 대 주		개인사업자		법 인		단 체	
		회원	회비	회원	회비	회원	회비	회원	회비
2000	고지	14,544,375	62,794,242	621,314	9,319,710	247,272	10,299,855	59,892	3,013,050
	실적	6,645,985	30,965,543	149,910	2,615,215	59,932	3,033,565	12,489	702,638
	참여율	45.7%	49.3%	24.1%	28.1%	24.2%	29.5%	20.9%	23.3%
2001	고지	13,384,047	60,307,430	658,025	9,900,733	278,199	11,199,950	62,914	3,191,435
	실적	6,253,647	29,553,314	185,788	3,193,205	77,410	3,521,768	12,404	777,250
	참여율	46.7%	49.0%	28.2%	32.3%	27.8%	31.4%	19.7%	24.4%
2002	고지	13,430,164	60,870,183	755,641	11,447,484	342,076	12,965,195	78,704	3,647,509
	실적	6,484,646	29,882,782	235,067	3,841,132	91,593	4,314,655	18,489	1,071,615
	참여율	48.3%	49.1%	31.1%	33.6%	26.8%	33.3%	23.5%	29.4%
2003	고지	13,668,983	62,619,227	811,817	12,744,691	375,550	15,213,525	70,694	3,522,253
	실적	6,155,946	28,231,368	237,628	4,001,557	95,767	4,314,932	37,626	2,318,435
	참여율	45.0%	45.1%	29.3%	31.4%	25.5%	28.4%	53.2%	65.8%
2004	고지	14,335,747	77,464,812	825,730	16,506,706	393,757	15,685,344	65,753	3,224,801
	실적	5,498,873	29,413,450	219,111	4,570,749	86,041	3,998,955	39,822	1,816,124
	참여율	38.4%	38.0%	26.5%	27.7%	21.9%	25.5%	60.6%	56.3%
2005	고지	13,976,651	78,263,537	896,428	17,649,530	420,244	20,755,340	81,908	5,138,508
	실적	5,362,335	29,979,777	219,195	4,645,488	86,075	4,182,842	38,494	1,645,923
	참여율	38.4%	38.3%	24.5%	26.3%	20.5%	20.2%	47.0%	32.0%
2006 5.23	고지	14,108,974	77,363,648	885,161	19,060,550	443,800	21,669,200	74,109	3,694,085
	실적	5,065,723	28,311,228	201,856	4,624,685	82,533	4,114,974	32,386	1,733,723
	참여율	35.9%	36.6%	22.8%	24.3%	18.6%	19.0%	43.7%	47.0%

자료: 대한적십자사 협조자료

- 이러한 부진한 참여율의 원인 중의 하나는 기부금을 모금하는 단체들 사이의 경쟁으로 볼 수 있음.
- 특정 연도에 정해져 있는 한 기업의 기부금을 어느 모금단체에 기부할 것인가는 홍보효과 및 세제상의 혜택을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기업의 기부금 행위는 홍보효과 등을 고려한 전략적 행위로 보아야 할 것임.
 - 대한적십자사보다 규모는 크지만 경쟁관계에 있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이 아닌 법정기부금으로 분류되어 50%의 손금산입 한도 비율이 적용되는 반면 대한적십자사의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되어 5%의 비율이 적용됨.
 -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대한적십자사보다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선택할 개연성이 높음.
- 대한적십자사 전체 모금액에서 차지하는 법인 회원의 기부금 비중은 10% 내외이지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전체 기부금 중에서 법인 기부금 비중은 2004년 66.6%, 2005년 72.9%에 이르고 있음

●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도별 기부금 현황 ● ●

(단위: 백만원)

구 분		공공기관/ 산하기관	사회/학교/ 종교단체	기업체	개인 / 기타	계
2005	모금액	5,861	16,872	115,146	20,031	157,910
	비 율	3.7%	10.7%	72.9%	12.7%	100.0%
2004	모금액	4,708	16,168	78,958	18,722	118,557
	비 율	4.0%	13.6%	66.6%	15.8%	100.0%

- 기부금품 모집 및 모금 활동에 있어 동등한 조건 아래 경쟁할 수 있도록 형평성 차원에서 50%의 손금산입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기부금을 법정기부금으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그러나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하는 법인의 기부금이 현재 손금산입한도인 5%를 초과하는 기업들이 있는지 여부와 그러한 기업들의 비중 등은 파악되지 않고 있으므로 과연 손금산입한도 적용비율이 대한적십자사 모금활동에 법인의 참여를 결정하는 중요 요인이라는 명확한 증거는 없음.
 - 따라서 손금산입한도 적용비율의 증가에 따른 법인회인 참여율 향상에 대한 예측은 하기 어려운 상황임.

III. 비용추계

- 손금산입한도의 확대에 따른 법인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하고 있는 법인들에 대한 상세 회계자료 및 기부금 총액 등 개별납세자료나 가공된 통계자료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구할 수 없음.
- 기업들이 매해 일정 금액을 기부금 총액으로 설정하고 그 액수를 모금단체에 따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결정한다고 본다면, 자연적인 세수변화 이외의 법인세수 변화는 거의 없을 것으로 추정됨.
- 그러나 새로이 확대된 손금산입규모에 의해 새로이 기부를 하기로 결정한 기업들이나 기존의 기부금 액수보다 증액하기로 결정한 기업들이 있는 경우에는 다소 법인세수의 감소를 예상할 수 있으나 정확한 액수의 추정은 어려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명옥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06. 7. 24.

발 의 자 :

제안이유

공익 또는 복지사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고 있고, 공익사업 및 인도주의 사업들에 대한 개인과 민간단체의 자발적 참여가 확산되는 추세임. 그러나 이러한 관심과 참여는 어려운 경제여건 때문에 제한받고 있는 현실임. 따라서 개인이 공익·복지사업을 위하여 기부한 경우 그 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기부를 통한 개인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나아가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대한적십자사·사회복지공동모금회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이를 지출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하거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 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 (안 제76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의2(공익·복지사업 기부금 손금산입특례 등) 거주자가 공익 또는 복지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이를 지출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하거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 지출하는 기부금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익·복지사업 기부금 손금산입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4호·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6조의2(공익·복지사업 기부금 손 금산입특례 등) 거주자가 공익 또 는 복지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지출하는 기부 금은 이를 지출한 당해 과세연도 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하거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 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 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 른 대한적십자사에 지출하는 기 부금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 출하는 기부금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 회복지시설 중 무료 또는 실비 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 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제안취지

- 공익복지실현을 위한 정부차원에서의 정책적 제도개선과 민간단체의 자발적 참여가 확산되는 추세이기는 하나 이를 위한 개인의 관심과 참여는 어려운 경제여건에 의해 제한되고 있는 실정임.
- 이번 개정안은 공익복지실현을 위하여 기부한 경우 그 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기부를 통한 개인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나아가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하고 있음.
- 대한적십자사·사회복지공동모금회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이를 지출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하거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안 제76조의 2 신설)

II. 기부현황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대한 개인들의 기부금액은 2005년 현재 362억원임.

●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개인기부자 모금액 ● ●

(단위: 백만원)

구 분	2003	2004	2005
개인기부	27,706	39,401	36,252
총모금액	138,246	175,630	214,741

자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대한적십자사의 경우 개인회원들의 기부액 비중이 70%를 상회하는데 2005년 현재 세대주 회원과 개인사업자 회원이 기부한 금액은 346억원임.
- 개인회원이 세대주 회원과 개인사업자 회원으로 구분된 것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적십자사가 주소를 받을 때 거주지가 일반 가정집과 사업장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임.

● ● 대한적십자사 기부현황 ● ●

(단위: 백만원, %)

	계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회비	비율	회비	비율	회비	비율	회비	비율	회비	비율
2001	37,045	100.0	29,553	79.8	3,193	8.6	3,521	9.5	777	2.1
2002	39,110	100.0	29,882	76.4	3,841	9.8	4,314	11.0	1,071	2.8
2003	38,866	100.0	28,231	72.6	4,001	10.3	4,314	11.1	2,318	6.0
2004	39,799	100.0	29,413	73.9	4,570	11.5	3,998	10.0	1,816	4.6
2005	40,461	100.0	29,979	74.1	4,645	11.5	4,182	10.3	1,645	4.1

자료: 대한적십자사

Ⅲ. 세수추계

- 현행 세법상 대한적십자사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개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분류되어 기준소득금액의 100%까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되고 있음(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52조 제6항).

- 개정안은 소득공제를 받고 있는 이러한 기부금을 세액공제로 바꾸는 것인데, 이 경우 세수변화는 소득공제로 인한 세수감소분과 세액공제로의 전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수감소분의 차이로 계산될 수 있음.
- 현행 세법상 소득공제로 인한 세수감소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기부금을 지출한 개인들을 근로자와 자영업자로 구분하여 각각 소득구간별로 실효세율을 적용해야 하나, 두 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서는 둘을 구분하기는 불가능함.
- 다만 세액공제의 도입으로 인한 세수감소분은 대강의 금액은 구할 수 있는바, 약 **708억원** 정도의 세수감소분이 예상됨.
- 개정안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해주고 있는데, 이들 두 단체에 대한 개인들의 지출금액은 일반적으로 10만원 이하의 소액금액으로 추정되므로 두 기관에 대한 개인들의 기부금액 708억원이 전액 세액공제 받는다고 가정하였음.
- 708억원은 세액공제 자체로 인한 세수감소분으로 현행 소득공제로 인한 세수감소분(이 금액은 추계불가)과의 차액을 고려하면 순수한 감소분은 이 보다 더 작을 것으로 예상됨.
- 대한적십자사 등에 대한 개인이 기부한 금액을 세액공제로 바꾸어주는 경우 세제상의 큰 인센티브가 되어 개인들의 참여가 어느 정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기부금간 그리고 단체간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함.